

업무 5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해설

1999. 4

농 림 부
농업기반공사설립사무국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 일 러 두 기 ▷

이 해설집은 새로이 제정·공포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입법정신과 제정취지를 올바르게 전파하고 조문해석에 대한 오류를 사전 예방하여 제정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 4편으로 편집·구성하였으며, 그 특징 및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 제1편은 기획예산위원회에서 3개기관등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조직 통합방침 확정,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등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정 경위를 일자별로 요약 정리하였음.
- ▶ 제2편은 법률체계 및 제정이유, 조문목차 등을 도식화하여 정리하였음.
- ▶ 제3편은 조문별 해설내용을 간결하게 기술하고, 하위법령에 대한 해설은 생략하였음. 다만, 기존의 제도와 관련하여 큰 변동이 없는 위임사항에 한하여 일부 수록 하고, 아울러 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행 관련조문을 발췌하여 수록하였음
- ▶ 제4편은 국회심사경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연대별 변천, 3개기관 연혁 및 기능중복현황, 수리조직의 외국사례, 장기채의 법률연혁, 각종 통계 및 법령해석요령 등 관련 참고자료를 수록하였음.

※ 이 해설집의 내용중 의문이 있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 기타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설립사무국 법령반 : ☎0343)420-3188, FAX : 0343)421-8036

目 次

I.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制定推進 經過	3
II. 法律體制 및 主要內容	4
1. 法律制定 事由	4
2. 法律體系 및 主要內容	4
III. 法律條文 解說	6
第1章 總 則	6
第2章 農業基盤公社	12
第1節 設 立	12
第2節 사 업	24
第3節 財 務	57
第3章 農地管理基金	67
第4章 補 則	89
附 則	105
IV. 參考資料	131

여 백

I.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制定推進 經過

< 推進經過 >

- IMF 사태이후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 강도높은 구조조정 분위기 확산
- '98. 7. 3~8. 5 기획예산위원회에서 농진공·농조연·농조등 농업 생산기반정비관련조직 통합방침 확정
 - 농정개혁위원회에서 3개기관 통합방침 확정(7. 8)
- '98. 7. 20 농업인단체, 학계대표, 공무원, 3개기관 임원등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구성
 -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이후 5차례 전체회의와 3차례 소위원회 개최
- '98. 8. 6 『통합신설조직의 기능과 역할』토론회 개최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 관계부처협의('98.8.19) 및 입법 예고('98. 9. 8)
- '98. 9. 12~9. 13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통합추진위원회 실무 작업단 현지 실사
- '98. 10. 2~11. 10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 법제처 심사
- '98. 11. 19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차관회의 심의 11. 18)
- '98. 11. 25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 대통령 재가
- '98. 11. 27 국회 법률안 제출
- '98. 12. 4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심의의결
- '99. 1. 5 국회본회의 의결
- '99. 2. 5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공포(법률제5759호)

Ⅱ. 法律體制 및 主要內容

1. 農業基盤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制定 事由

- 농업기반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관련 기관을 통합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체계를 일원화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동연합회를 통합하여 새로운 『농업기반공사』설립
 - 농업생산기반 확충·관리 및 농촌구조개선 전담기관으로 육성하므로써 조직을 효율화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

2. 法律體系 및 主要內容

□ 4장 3절 51조 부칙으로 구성

- 제1장은 농업기반공사의 설립 목적등 총칙사항, 제2장은 농업기반공사에 관한 설립요건, 사업종류 및 시행절차, 보조금등 재물에 관한 사항, 제3장은 농지관리기금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은 본문에서의 보충적인 사항인 보칙, 그리고 부칙에는 시행일 및 경과규정 등으로 되어있음.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농업기반공사
 - 제 1 절 설 립, 제 2 절 사 업, 제 3 절 재 무
 - 제 3 장 농지관리기금
 - 제 4 장 보 칙
 - 부 칙

□ 법률 주요목차

주요 내용	법률 조문
제1장 총 칙 (목적·정의)	제1조·제2조
제2장 농업기반공사	
제1절 설립	제3조~제9조
제2절 사업	제10조
○ 사업	제11조~제12조
○ 공사관리구역의 설정·관리·변경	제13조~제17조
○ 농업용수이용자 및 이용료	제18조~제24조
○ 농지매매, 임대차, 교환·분합 및 재개발사업과 자금지원	
제3절 재무	제25조~제30조
○ 자금조달 및 손익금의 처리 등	
제3장 농지관리기금	제31조~제39조
○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운용 및 관리등	
제4장 보 칙	제40조~제51조
○ 수리계	
○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설정·등록	
○ 감독	
○ 벌칙 등	
부 칙	부칙 제1조
○ 시행일	부칙 제2조
○ 폐지법률	부칙 제3조~제5조
○ 설립위원회	부칙 제6조~제7조
○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조치	부칙 제8조
○ 해산 및 청산의 특례	부칙 제9조
○ 권리·의무의 승계	부칙 제11조
○ 조합원 및 조합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2조~제13조
○ 조합원의 조합채무분담액과 장기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4조
○ 정부의 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7조
○ 다른 법률의 개정	부칙 제1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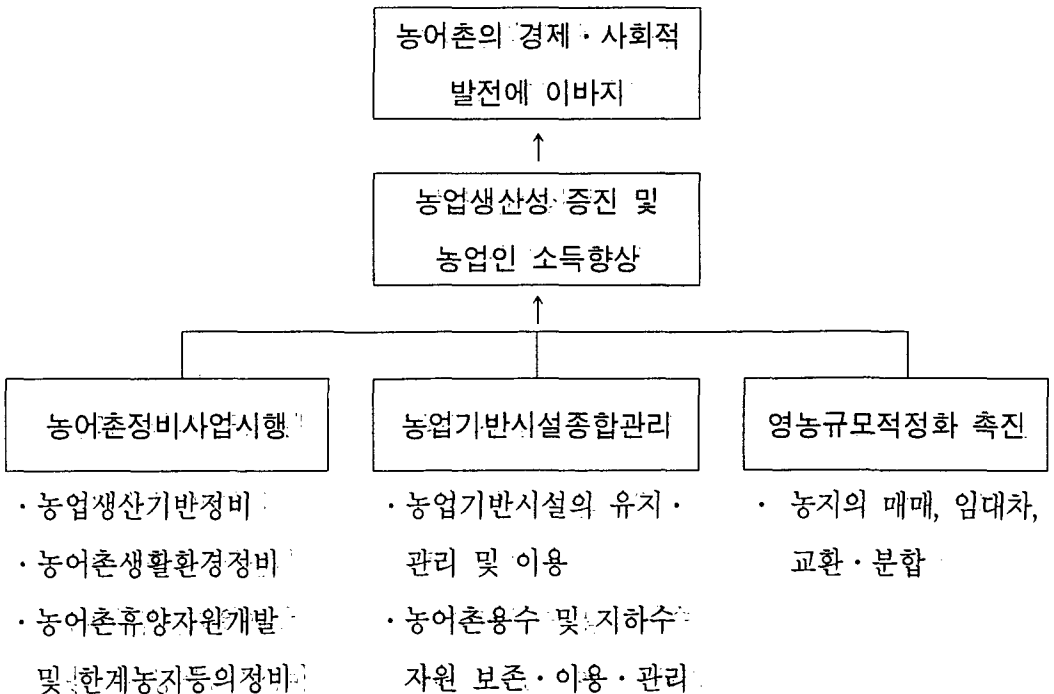
Ⅲ. 法律條文 解說

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農業基盤公社를 設立하고 農地管理基金을 設置하여 農漁村整備事業을 施行하고 農業基盤施設을 종합관리하며 農業人의 營農規模適正化를 촉진함으로써 農業生産性を 增進시키고, 農漁村의 經濟·社會的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내용해설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설립목적



- 농어촌정비사업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
-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
 -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 보존·이용·관리
- 영농규모적정화
 - 농지매매사업, 장기임대차사업,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매사업, 전업농가의 영농복귀지원사업, 농지의 교환·분합사업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第1條(目的) 이 법은 農漁村振興公社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가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기반의 조성·정비와 농어가의 소득향상기반의 확충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개량조합법 제1조>

第1條(目的) 이 법은 농민의 자주적인 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이용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촌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농민의 경제적 자립과 이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農業基盤施設”이라 함은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農業生産基盤施設을 말한다.
2. “公社管理地域”이라 함은 農業基盤公社가 관리하는 農業基盤施設의 敷地 및 農業基盤施設로부터 農業用水의 供給을 받는 地域을 말한다.
3. “農地”라 함은 農地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農地를 말한다.
4. “農業人”이라 함은 農地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農業人을 말한다.
5. “農業法人”이라 함은 農地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農業法人을 말한다.
6. “專業農業人”이라 함은 農業發展에 中추적이고 先導적인 役割을 할 수 있는 農業人으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農地와 農業勞動力을 보유한 農業人을 말한다.
7. “農業基盤施設管理權”이라 함은 農業基盤施設을 유지·관리하고, 당해 施設을 이용하거나 당해 施設에 의하여 用水를 供給받는 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하는 權利를 말한다.
8. “長期債”라 함은 農漁村整備法에 의한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者가 農業基盤整備事業을 위하여 政府 一般會計, 財政融資特別會計의 融資計定에서 교부된 資金을 金融機關으로부터 融資받아 생긴 債務와 國際金融機構(外國政府 基金을 포함한다)로부터 借款을 받아 생긴 債務를 말한다.

□ 내용해설

- 정의규정은 해석상의 오류방지와 용어의 명확한 개념정립을 위한 법 규용어로서의 의미를 가짐

○ 용어신설 또는 용어수정 사항

- “농업기반시설”은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축약하여 정의
- “공사관리지역”은 농지개량조합법상의 수혜지역과 조합구역의 개념을 재정립
- “농업인”은 농어촌진흥공사법상의 “농가” 개념을 농지법상의 “농업인” 개념으로 수정
- “전업농업인”은 새로 제정되는 농업·농촌기본법상의 용어정의와 일치시킴.
- “장기채”는 농지개량조합법상의 내용 중 양곡관리기금에서 교부된 자금사항은 이미 상환 종료되어 그 내용을 삭제 수정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

4.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농어촌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등에 물을 저류 또는 관리하기 위한 시설·홍수면 및 수면부지를 말한다), 양수장,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농지개량조합법 제2조제3호·제4호>

3. “수혜지역”이라 함은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지개량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4. “조합구역”이라 함은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부지와 그 수혜지역을 말한다.

<농지법제2조제1호>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 제2조제2호>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농지법 제2조제3호>

3.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3호>

3. “專業農家”라 함은 주된 所得을 農業에 의존하는 農家로서 農林部승으로 정하는 規模이상의 農地와 農業勞動力을 보유한 農家を 말한다.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7호>

7. “農地改良施設管理權”이라 함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당해 施設을 이용하거나 당해 施設에 의하여 用水를 供給받는 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하는 權利를 말한다.

<농지개량조합법 제2조제6호>

8. “長期債”라 함은 農漁村整備法에 의한 基盤整備事業 施行者가 基盤整備事業을 위하여 政府 一般會計, 財政融資特別會計의 融資計定 및 양곡 관리기금에서 교부된 資金을 金融機關으로부터 融資받아 생긴 債務와 國際金融機構(외국정부기금을 포함한다)로부터 借款을 받아 생긴 債務를 말한다.

第 2 章 農業基盤公社

第 1 節 設 立

第3條(設立)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農業基盤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를 設立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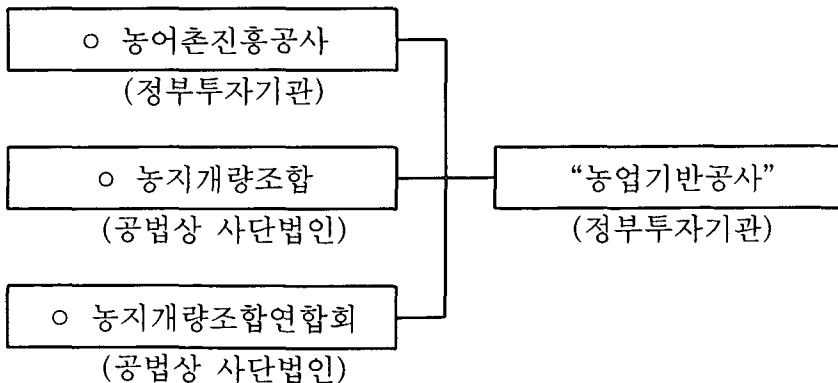
第4條(法人格) 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 내용해설

- 농진공·농조연·농조등 3개기관을 통합하여 새로운 공기업형태의 정부투자기관 설립
- 신설공사의 명칭은 “농업기반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임무는 제1조에서 제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 ※ 공사명칭에 대해서는 종전에 거래의 안정과 신용을 위해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두었으나, 정부의 행정규제 폐지 차원에서 유사명칭 사용근거 조항을 제외함.
- 공사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라는 특별법 제정에 의해 설립됨(특허주의)

(현 행)

(신 설)



- 제4조 중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이 아님에도 존재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 즉 법인격을 부여받은 조직체를 말함.

따라서 법인격의 성립여부는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못함. 반면에 중중등의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법적근거를 요하지 않음.

- 공사의 법인성격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법적근거에 의한 공법인으로서 공공재단법인 성격의 영조물 법인이라 할 수 있음.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에서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정부투자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조>

제4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第1條(目的) 이 법은 農業基盤公社를 設立하고 農地管理基金을 設置하여 農漁村整備事業을 施行하고 農業基盤施設을 종합관리하며 農業人의 營農規模適正化를 促進함으로써 農業生産性を 增進시키고, 農漁村의 經濟·社會的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5조>

제5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第5條(事務所) ①公社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公社는 그 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필요한 곳에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③公社는 分事務所에 地域農業人의 代表로 구성되는 運營代議員會를 두며, 主事務所에 運營代議員會의 代表로 구성되는 諮問機構를 둔다. 運營代議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公社의 定款으로 정한다.

□ 내용해설

- “주된 사무소”라 함은 공사의 경영활동의 주된장소로서 법인 설립등기된 소재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본사를 의미함.
- “소재지”는 법인의 주소를 의미하는데 자연인과 법인격 있는 법인은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활동과 법률행위의 주체자로서 주소가 있어야 함.
주소에 대한 법률효과에는 민·상법상의 채무이행장소(또는 채무변제의 장소),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재판관할 근거지·송달장소, 그 밖에 관할 등기소의 결정표준 등이 있음.
-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라 함은 보통 일반적인 입법기술 형태이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누락될 경우 무효로 됨.
- “정관”이라 함은 공사가 제정한 자치법규로서 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조직, 임·직원 임면사항, 업무기능 및 기타 경영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한 것을 말함.
※ 정관은 공사 사규와의 관계에서 내규로서 사규보다 상위의 개념임.
- 정관의 효력
 - 정관은 공사 내부적인 규율관계로서 공사와 직원을 구속하며,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정관 작성시 포함할 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등 기타
- 제2항중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라 함은 주된소재지 (주소)외에 도단위 또는 시·군단위의 지방조직에 주소를 둘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말함.
- 제3항중 “운영대의원회”의 설치목적 및 법적성격
 - 운영대의원회의 설치목적은 농업인의 참여를 통해 농업용수이용자의 자율관리와 대농업인 서비스 제고 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음.
 - ※농림해양수산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추가반영 사항임
 - 운영대의원회는 자문기구로서의 법적성격을 지니고 있어 종전의 조합대의원의 총회 의결기능과는 다름
 - 유지관리사업계획, 수로감시원추천, 물분쟁조정, 공사관리지역변경 등 임무기능과 구성·운영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 명시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6조>

제6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지부등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농어촌진흥공사 정관 제3조>

제3조(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사·지부(이하 “분사무소”라 한다) 및 사업단을 둔다.

第6條(資本金 및 出資) ①公社의 資本金은 5兆원으로 하되, 國家가 그 全額을 出資한다.

②國家는 公社의 사업에 필요한 動産 또는 不動産을 公社에 現物로 出資할 수 있다.

③國家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家가 造成한 土地 또는 農業基盤施設管理權을 公社에 出資할 수 있다.

□ 내용해설

○ “자본금”이라 함은 법정자본금으로서 국가가 출자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규정한 것인 바, 설립과 동시에 국가가 전액 5조원을 출자한다는 의미는 아님. 한편 국가가 실제로 출자한 납입 자본금과는 다름.

○ 자본금 5조원 산출내역

- '97결산기준 3개기관의 자본금 규모 2조9천6백억원이 우선 출자 대상
- 나머지 2조원은 국가가 조성한 토지등 현물과 농업기반시설관리권 등이 향후 출자 대상

※ 자본금 증가내역

(단위 : 억원)

기 관 별	'96년말(A)	'97년말(B)	증감(B-A)
농 조	23,749	27,616	3,867
농 조 연	119	161	42
농 진 공	1,231	1,807	576
계	25,099	29,584	4,485

○ 자본금의 출자방법 : 현금, 유가증권등 동산 또는 부동산

(다만, 부동산을 재평가하여 현물자체로 출자가능)

※ 농조재산의 재평가를 통한 자본잉여금 확대

○ 공사에 출자가능 객체(대상)

① 국가가 조성한 토지

- 간척지, 매립지, 개간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

② 농업기반시설중 농림부장관이 관리권으로 설정하는 시설

- 방조제, 하구둑 및 그 부속시설

※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설정·등록절차는 법제45조·제46조 참조

○ 현물출자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을 따름.

- 국유재산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승인을 득하여 현물출자함

- 공사에 출자하는 농지개량시설관리권의 출자액은 당해시설의 신설 또는 증·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함

○ 타 투자기관의 자본금 출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법정자본금	납 입 자 본 금				'98 까지 납 입 율
		'96까지	'97년도	'98추경	계	
계	387,500	149,154	7,457	26,703	183,314	47.31%
농 어 촌 진 흥 공 사	10,000	965	300	170	1,435	14.35%
농 산 물 유 통 공 사	800	532	-	-	532	66.50%
한 국 조 폐 공 사	150	66	-	-	66	44.00%
한 국 전 력 공 사	60,000	31,184	-	-	31,184	51.97%
대 한 석 탄 공 사	4,500	2,783	200	-	2,983	66.29%
대 한 광 업 진 흥 공 사	1,500	1,393	100	-	1,493	99.53%
한 국 석 유 개 발 공 사	30,000	13,058	-	-	13,058	43.63%
대 한 무 역 투 자 진 흥 공 사	50	5	-	-	5	10.00%
한 국 도 로 공 사	100,000	39,561	5,266	14,000	58,827	58.83%
대 한 주 택 공 사	80,000	34,627	-	-	34,627	43.28%
한 국 수 자 원 공 사	50,000	14,156	1,591	6,393	22,140	44.28%
한 국 토 지 공 사	50,000	10,500	-	6,140	16,640	33.28%
한 국 관 광 공 사	500	324	-	-	324	64.80%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함.

※ 참고사항 : 농어촌진흥공사는 '98까지의 납입자본금(1,435억원)을 정부가 100% 출자 하였음.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7조>

제7조(자본금 및 출자) ①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되 국가가 그 전액을 출자한다.

②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③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국가가 가지는 농지개량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第7條(登記) ①公社は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와 分事務所의 設置·移轉·변경 등 公社の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내용해설

- 법인등기의 목적은 법인의 조직이나 내용을 등기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기하고, 일반에게 공시함에 있음.
 - ※ 등기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처벌을 받음(민법 제97조 제1호)
- 법인등기의 효력
 -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성립요건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효력이 있음
 - 법인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 되며, 분사무소의 설치·이전·변경 등의 등기는 대항요건임.
- 법인등기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법인등의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 있음.
- 법인의 설립등기사항
 - ①목적 ②명칭 ③주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 ④자본금, ⑤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⑥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등기의 경우에는 주소 제외) ⑦공고의 방법

○ 분사무소의 등기방법

구 분		등 기 기 한	등 기 사 항
설 치	분사무소 설치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사무소 소재지(본사)에서는 2주일이내에 - 그 설치된 분사무소에서는 3주일이내에 - 다른 기존의 분사무소에서는 3주일이내에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연월일 목적, 명칭, 분사무소소재지, 임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고방법,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연월일
	주사무소(본사) 또는 기존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 분사무소 설치할 때	- 그 설치된 분사무소 소재지, 기존의 분사무소, 주된사무소에서는 3주일이내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이 전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 신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 상기 설립등기사항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사무소와 구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 이전한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 목적, 명칭, 분사무소소재지, 임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고방법
	동일한 등기소 관할구역 안에서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이전할 때	- 신·구사무소에서 2주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
변 경	법인설립등기사항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사무소에서는 2주일이내에 - 분사무소에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 변경된 사항

※ 여기서 등기기간은 장관의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함.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8조>

제8조(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지부의 설치·이전·변경 등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 내지 제67조>

(내 용 생 략)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1조 내지 제3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등(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등기) 법인등의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3조(분사무소의 등기사항) 법인등의 분사무소에서는 주사무소의 등기사항 중 다음의 사항이외에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다.

1. 목 적
2. 명칭 또는 상호
3.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4. 법인등의 공고를 하는 방법
5. 법인등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법인등을 대표할 임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7. 수인이 공동으로 법인등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법인등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9.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第8條(代表權의 제한) 公社의 이익과 社長의 이익이 相反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社長이 公社를 代表하지 못하며 監事가 公社를 代表한다.

□ 내용해설

- “대표권”이라 함은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여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직무권한 행위를 말함.
사장은 공사의 의사집행 및 대표기관으로서 행위능력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대표권을 가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공사의 기관에는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이사회, 의사집행기관으로서의 사장, 감독기관으로서의 감사가 있음.
-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라는 의미는 법인의 권리능력 주체인 공사의 이익과 공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장의 이익이 서로 반대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사장은 대표권이 없다는 뜻으로 대표권 제한사유에 해당됨.
이 경우에는 감독기관으로서의 감사가 공사를 대표하되, 당해 사항에 한하여 대표권을 가질뿐 임. 그 밖에 사장의 대표권 제한근거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3조제3항중 “사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제10조(대표권의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3조제3항>

제13조(임원의 직무) 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第9條(代理人의 選任) 社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職員중에서 公
社의 業務에 관한 모든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 行위를 할 수 있는 權
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 내용해설

○ 대리인 선임 목적

사장은 공사의 대표자로서 모든 공사의 업무에 직접적인 참여와 권
리행사가 곤란하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임.

- 재판상 행위 : 민사소송행위로서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됨이 원칙이나, 공사직원중에서 재
판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원활히 제반 송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재판외 행위 : 민사소송외의 사법상의 모든 적법행위에 대한 대리
인을 선임 대리행위 가능(단,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음).

○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사장)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는 본인(사장)에게 대하여 효력 발생됨.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
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를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第 2 節 사 업

第10條(사업) ①公社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農漁村整備法에 의한 農漁村整備事業(農業基盤整備事業地區안에서 河川整備事業을 포함한다)
 2. 農業基盤施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農漁村用水 및 地下水資源의 開發·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4. 農地의 造成 및 利用增進事業, 營農規模適正化를 위한 農地의 賣買·賃貸借·交換·分合에 관한 사업, 農地 등의 再開發事業
 5. 農漁村의 道路의 開發 및 整備, 地域均衡開發및 地方中小企業育成에 관한法律에 의한 複合團地의 造成, 産業立地및 開發에 관한法律에 의한 農工團地의 開發 등 農漁村地域開發事業
 6. 農漁村의 水質汚染防止施設·下水道施設 및 汚水·廢水處理施設의 設置 및 지원사업
 7. 第1號 내지 第6號의 사업을 위한 試驗·研究·調査·測量·換地·設計·工事監理 및 施設物安全診斷事業
 8. 海外農業開發 및 技術用役事業
 9.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기타의 者로부터 委託받은 사업
 10.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가 施行할 수 있는 사업
 11. 기타 公社의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公社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第1項 各號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 내용해설

- 공사의 업무범위는 3개기관의 사업을 통합하되,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핵심기능 중심으로 정비하였음.

- 농어촌정비사업, 농지등의 재개발, 농업용수 및 농업기반시설유지 관리, 구조개선사업등

○ 3기관 업무 및 농업기반공사 업무비교현황

기관명	3기관 업무	농업기반공사 사업 (제10조)
농어촌진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경영규모적정화사업 - 농어촌생활환경개선등 농어촌정비사업 - 농지조성사업 - 농어촌용수개발사업 - 정주권개발사업 - 농가의 전업지원 및 농어업인 취업자료 수립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매매·임대차등에 관한 사업 - 농어촌정비사업 - 농어촌용수개발사업 - 농지조성 및 이용증진사업 - 농어촌지역개발사업 - 복합단지 조성 -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업
농지개량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반정비사업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 - 농사개량사업 - 기타 수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연구·지도사업 - 회원임직원 교육 - 환지사업 - 경지정리 조사·설계·감리 - 농지개량조합자립육성금고운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연구·조사·환지·설계·공사감리 및 시설물 안전진단

○ 통폐합승계 업무

- 농어촌정비사업에 포함된 업무 : 농지개량사업, 농지확대개발사업, 간척종합개발사업, 기반정비사업, 농어업시설의 조성 및 지원, 수산업생산기반사업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에 포함되는 업무 : 대규모수리시설물의 관리, 농지의 보전·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 기타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포함된 업무 : 수익사업, 농업진흥지역 지정업무 지원
- 3기관 통합으로 폐지되는 업무 : 농어민의 취업알선업무, 농지개량 조합자립육성금고 운용·관리, 농사개량사업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업무 : 산지종합개발사업, 초지조성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 제2항중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라 함은 공사의 설립목적 범위안에서 자회사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 법인에 출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뜻함.
- 출자대상은 자본금(또는 부동산등 현물포함)이며, 현물출자의 경우 가액결정 및 출자방법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함.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

제12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분합등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 및 그 알선사업
2.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농지개량사업지구안에서의 하천정비사업을 포함한다), 농지개량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지하수의 보전·개발·이용 및 관리, 농어촌용수개발사업
3.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4.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확대개발사업
5.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사업
6. 농어촌발전을 위한 간척종합개발사업과 대규모수리시설물의 관리
7.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8. 농어촌휴양지 및 그 시설의 개발 및 관리, 농공단지의 개발, 농어촌의 수질오염방지시설·하수도시설 및 오수·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농어촌의 도로개발 및 정비, 농어촌진흥지역지정업무의 지원 및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9. 농·어업시설의 조성 및 지원, 수산업생산기반사업 및 산지종합개발사업
 10. 제2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대한 시험·연구·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11.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자금의 지원 및 농가의 전업 지원
 12. 농지의 소유·이용상황 및 농어민의 취업에 관한 자료등 농업구조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13.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14.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료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기타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농지개량조합법 제41조·제80조>

- 제41조(사업)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기반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라목의 사업을 제외한다)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사개량사업
 4. 농지 또는 농지의 보전·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5. 수익사업
 6. 기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제1항제5호의 수익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사업) 연합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업
2. 회원의 임원 및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기반정비사업에 수반하는 환지사업
4. 경지정리사업에 수반하는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5. 농지개량조합자립육성금고의 조성 및 운용·관리
6. 국가 또는 회원이 위탁하는 사업
7. 기타 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제2항>

제9조(업무) ②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第11條(公社管理地域의 設定·관리) ①公社는 公社管理地域을 設定·관리하여야 한다.

②公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管理地域을 設定하고자 하는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管理豫定地域을 20日이상 公告하고 이를 利害關係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管理地域을 設定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公社管理地域을 管轄하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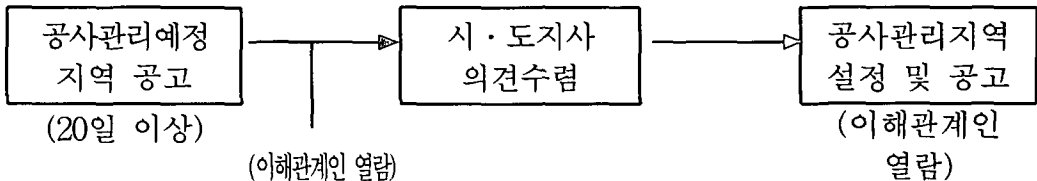
④公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管理地域을 設定한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고 利害關係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내용해설

○ 공사관리지역의 설정 목적

중전 농지개량조합 조합원의 농업기반시설의 사용권을 계승시키고, 동 시설의 기능유지 및 농업용수공급에 대한 관리의 효율화와 농업용수이용료의 합리적 관리기준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농업인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 공사관리지역 설정 절차



○ 공고방법 및 장소는 관할 도사무소 및 해당 분사무소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 종전 조합구역과 공사관리지역의 차이

	공 사 관 리 지 역	조 합 구 역
법적근거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
목 적	농업기반시설의 기능유지관리를 위한 권역설정	조합의 설립요건 기준
대상지역	관리지역범위는 조합구역과 같음	(좌 동)
관리주체	농업기반공사	농지개량조합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지개량조합법제2조제4호>

제2조(정의)

4. “조합구역”이라 함은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부지와 그 수혜지역을 말한다.

第12條(公社管理地域의 변경) ①公社는 새로운 農業基盤施設을 관리·운영하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公社管理地域 외의 地域을 公社管理地域으로 編入할 수 있다.

②第11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社管理地域에의 編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公社는 公社管理地域안에 있는 土地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農業基盤施設로부터 農業用水의 供給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土地의 利害關係人의 요청에 의하여 公社管理地域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公社는 당해 土地의 利害關係人의 行方不明 기타의 사유로 利害關係人이 그 요청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그 土地를 公社管理地域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公社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管理地域에서 제외하는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管理地域에서 제외하는 土地를 公告하여야 한다.

□ 내용해설

- 공사관리지역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새로이 편입할 수 있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가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농업용수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해당지역 농민의 편입요청에 의거 공사관리지역안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용수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
-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공사관리지역 설정시부터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공급을 받을 수 없는 지역으로 인정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농업용수공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 농업기반시설의 노후 또는 기능저하로 사실상 농업용수공급을 받을 수 없거나 장차 수년내에 용수공급 시설기능의 복구가망이 없는 경우
- 도로 확장등 공공사업지구로 확정된 토지 또는 농지전용 허가된 토지로서 본래 농지의 용도로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행방불명등으로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지개량조합법 제18조>

제18조(구역의 변경) ①조합이 조합구역외의 지역을 조합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편입예정지역과 그 지역안에서의 기반정비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그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안에서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할 수 있는 지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설치한 기반시설이 있거나, 당해 조합의 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③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기존의 조합구역과 동일한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조합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④조합구역안에 있는 토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조합구역안의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와 관계가 있는 조합원(조합원자격자가 아닌 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은 조합에 대하여 그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조합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토지를 조합구역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은 조합원의 행방불명 기타 조합원이 그 제외를 요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청이 없더라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第13條(農業用水利用者) ①公社管理地域안에서 農業用水의 供給을 받는 者(이하 “農業用水利用者”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者로 한다.

1. 公社管理地域안의 土地를 사용·수익하는 土地所有者
2. 公社管理地域안의 土地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土地에 대하여 所有權외의 物權(登記된 賃借權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者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②公社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用水利用者の 名簿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내용해설

- 농업용수이용자의 권리·의무
 - 종전 농지개량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승계시키고, 공사관리지역 안의 농업기반시설 등 편익시설 이용권리(시설 사용권) 및 동 시설 이용에 따른 농업용수이용료의 비용부담의무
- “소유권외의 물권을 가진자”라 함은 용익물권중 전세권을 제외한 지상권·지역권을 가진자를 말함. 민법상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므로 전세권자는 농업용수이용자의 기준에 포함하지 않음. 또한 물권중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자는 물권을 일정한 요건하에 처분하여 환가하는 물권이므로 성질상 농업용수이용자격에 포함되지 않음.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공사관리지역안의 국유지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업자가 조성한 공사관리지역안의 토지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공사관리지역안의 매립지등 토지

- 농업용수이용자 명부작성 목적
 - 농업용수이용자의 현황파악과 용수공급 및 용수이용료 징수업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농업용수이용자와 종전 조합원의 차이

	농업용수이용자	조합원
자격기준	공사관리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및 물권을 가진자	조합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및 물권을 가진자
사용·수익권	농업기반시설사용권 및 농업용수 이용	(좌 동)
비용부담	농업용수이용료 납부	조합비 납부
공익권	(없음)	총회의결권, 조합장선거권 및 피선거권등
자격자	950,069명('97기준)	(좌 동)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지개량조합법 제19조>

제19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구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조합구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자
3. 조합구역안의 토지를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소유권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조합원자격자로 인정한 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第14條(農業用水의 供給義務 및 利用料의 徵收) ①公社는 農業用水利用者에게 農業用水를 성실하게 供給하여야 한다.

②公社는 農業基盤施設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業用水利用者로부터 農業用水利用料(이하 “利用料”라 한다)를 徵收할 수 있다.

③公社는 利用料의 徵收節次·農業用水供給條件 및 운영 등에 관한 規程을 정하여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내용해설

○ 농업용수 공급업무의 성실의무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안의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주체로서 농업용수이용자의 영농편익 증진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보호·관리는 물론 농업용수를 적기에 성실하게 공급하여야 할 의무규정을 법제화함.

○ 농업용수이용료는 적절한 농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용수를 이용하거나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혜택을 받는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하는 필요한 경비를 말함.

- 종전 조합비는 공용부담금성격으로서 일반관리비, 시설유지관리 및 개보수비, 관리재산의 취득비, 시설물의 감가적립금, 임직원의 퇴직급여적립금, 일반관리비의 차입금상환 등 조합 경상비에 충당되는 금액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일반조합비와 조합의 사업시행과 운영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받는 토지의 조합원에게 이익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특별조합비가 있음.

※ 특별조합비의 경우 조합운영경비의 국고보조금 이후에는 실제로 징수실적은 없음

- 제3항중 “공사는 이용료의 징수절차·농업용수공급조건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 함은 세부적인 사항을 농림부 훈령(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함.
- 조합비 연도별 추이
 - '87까지 : 26kg/10a
 - '88년도 : 10kg/10a
 - '89~'95 : 5kg/10a
 - '96이후 : 6,000원/10a (매년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금액기준으로 전환)
 - ※ 나머지 조합운영비의 부족액은 국고지원
- 농조의 관리시설 (수원공 11,233개소, 용·배수로 90,590km)
 - 수원공 : 11,233개소(저수지 3,160, 양·배수장 3,121, 보 3,621, 기타 1,331)
 - 용수로 : 59,915km(토공 41,170, 공작물 18,745)
 - 배수로 : 30,675km(토공 27,925, 공작물 2,750)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지개량조합법 제43조·제44조>

제43조(경비의 부과) ①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금전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적립금과 상환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감가상각충당금과 기타 필요한 적립금

2. 조합의 부채원리금의 상환금

③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조합비의 부과기준) ①조합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하 “조합비”라 한다)은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1천제곱미터에 대하여 6천원으로 한다. 다만, 그 토지의 재배작물별 조합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이후의 조합비는 전년도 조합비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당년도의 물가상승률과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정한다.

第15條(利用料의 滯納處分) ①公社는 利用料를 滯納한 者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에게 그 徵收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公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당해 市長·郡守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利用料의 徵收를 의뢰받은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 내용해설

○ 체납처분 의뢰 절차

농업용수이용료에 대한 체납자가 발생하는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성명·납입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기재한 부과금 명세서를 시장·군수에게 송부

※ 종전 조합비의 경우 징수의뢰 수수료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임

○ 지방세체납처분의 효과

- 징수권자는 체납자에게 강제 징수 또는 압류조치 등의 법률적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지개량조합법 제51조>

제51조(부과금의 징수의뢰) ①조합은 조합의 경비 기타 조합원에 대하여 부과한 금전(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체납한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그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第16條(異議申請) ①第11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公社管理地域의 設定·編入 또는 제외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公告한 날부터 20日이내에 公社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利用料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農業用水利用者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0日이내에 公社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③公社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申請을 받은 날부터 20日이내에 그 適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社의 決定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그 決定書를 받은 날부터 14日이내에 農林部長官에게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⑤農林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申請을 받은 날부터 20日이내에 裁決을 하고 그 사실을 公社와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내용해설

○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공사관리지역설정·변경 또는 해제, 농업용수이용료 등과 관련한 공사의 부당한 행위 및 조치사항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행정의 효율을 기하려는 입법 취지임.

○ 이의 신청기간

내 용	이 의 신 청 기 간
- 공사관리지역의 설정·편입 이의 신청(법제11조·12조)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 농업용수이용료 이의신청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이의신청 결과 처리

- 이해관계인은 공사의 적부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는 장관의 재결신청을 통해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음.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지개량조합법 제50조>

- 제50조(이의신청) ①조합으로부터 금전의 부과 또는 노역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가 그 부과 또는 요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부과 또는 요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합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④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사실을 조합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7條(農業用水利用者の 自律管理) ①公社는 公社管理地域중에서 農業用水利用者が 農業基盤施設 및 農業用水를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地域에 대하여는 당해 地域의 農業用水利用者と 협의하여 그 관리·운영에 관한 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②公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用水利用者에게 農業基盤施設 및 農業用水의 관리·운영에 관한 業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利用料의 減免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내용해설

○ 위탁관리의 필요성

- 공사관리지역안의 농업기반시설중 독립되어 있는 수원공·지선 및 지거등 말단수로까지 공사가 직접관리하는 것보다는 농업인이 자율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인에게 그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 농업용수이용료 감면등 인센티브 제공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지개량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조합구역관리) 조합은 조합구역중에서 저수지등 기반시설이 독립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조합원이 당해 기반시설을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자치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원과 협의하여 자치구역으로 자정한 후 그 관리·운영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구역의 관리·운영등에 관한 기준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第18條(農地賣買事業 등) ①公社は 專業農業人の 육성과 農業人이 아닌 者の 農地所有를 억제하기 위하여 農業人이 아니거나 轉業 또는 隱退하고자 하는 農業人 등의 農地를 買入하여 專業農業人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對象者(이하 “專業農育成對象者”라 한다) 및 農業法人에게 우선적으로 賣渡할 수 있다.

②公社は 專業農育成對象者 및 農業法人에게 農地購入에 필요한 資金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專業農育成對象者 및 農業法人의 선정기준 및 農地賣買事業資金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 내용해설

○ 농지매매사업의 목적

비농가,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소유 농지를 매입하여 이를 쌀 전업농 등에게 매도함으로써 영농규모확대 및 농지집단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전문화·규모화된 쌀농업경영체 육성.

○ 매입 대상농지

농업진흥지역안의 답 및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지정리 완료된 답을 대상으로 ①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답 ②비농가 및 비농업 법인소유의 답 ③전업을 위해 0.1ha까지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의 답 ④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답 ⑤벼외의 타작목 전환을 위해 0.1ha까지 벼농사의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의 답 ⑥환지지정 포기 답 ⑦처분명령 답 등 순으로 매입

- ※ 쌀전업농등이 영농규모확대시 불가피하게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결된 진흥박의 농지라도 매입가능
- ※ 제주도에 한하여 농업진흥지역안의 감귤과수원 및 농업진흥지역밖의 우량 감귤과수원을 매입

○ 매입 제한농지

- 농업진흥지역외의 답
- 매입하고자 하는 농지에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어 매입후 농지로서의 이용이나 매도가 곤란한 답
- 공유자중 일부 소유자가 매도하는 답

○ 매입대금의 지급 : 매매계약체결 대금의 10% 지급,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잔금 전액 지급

○ 매도 대상자

- 쌀 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 벼를 주작목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한 농가중 2년이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벼를 주작목으로 경영할 자
- 경지정리지구 증환지대상자
- 과수전업농, 과수를 주작목으로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제주도에 한함)

○ 지원(융자)조건 : 연리 4.5 % ('99년 이전 지원농지 연리 3 %), 2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

제13조(농지매매사업등) ①공사는 전업농가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가가 아닌 가구,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가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자(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라 한다) 및 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 기준과 농지매매 및 농지구입자금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第19條(農地の 長期賃貸借事業) ①公社は 轉業 또는 隱退하고자 하는 農業人の 農地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農地를 賃借할 수 있다.

②公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賃借하는 경우에는 賃借期間중의 賃借料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公社は 그 所有農地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農地를 專業農育成對象者 또는 農業法人에게 賃貸하거나 그 營農을 委託할 수 있다.

④公社は 長期賃貸借事業의 活性化를 위하여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者에 대하여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獎勵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賃貸借對象者의 선정과 賃貸借料率 기타 賃貸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 내용해설

-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의 목적
 -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하는 농가등으로부터 장기임차한 농지와 공사 소유농지를 쌀전업농 또는 농업법인에게 장기임대함으로서 영농규모 확대
- 장기임차 대상농지 (공사가 농지를 빌릴 경우)
 - 경영이양 보조금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답
 - 전업(轉業)을 위하여 0.1ha까지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의 답
 - 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답
 - 벼이외 타작목 전환을 위해 0.1ha까지 벼농사의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의 답
 - 임차하고자 하는 자가 자경하고 있는 답과 100m이내 인접된 비농가의 답

- 공사가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 만료 후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자의 농지
 - ※ 제주도에 한하여 전업(轉業)·은퇴 또는 타작목 전환을 위해 감귤 농사를 완전히 포기한 자의 과수원 임차
- 임대 대상자(공사가 농지를 빌려줄 경우)
 - 쌀 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벼를 주작목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전업한자중 2년 이내 영농복귀하여 쌀을 주작목으로 경영할 자(전업당시 임대농지규모 이내)
 - 과수전업농,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제주도에 한함)
- 장기임차 대상지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
 - ※ 군지역, 시 지역중 읍·면지역, 시의 동 지역중 녹지지역
- 장기임대차기간 : 5 ~ 7년
- 임차료의 지급 및 수납
 - 임차료지급 : 임차권설정등기,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제출중 하나의 행위가 완료될 때에 임대차의 희망에 따라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지급
 - 임차료수납 : 계약 총금액을 균등분할하여, 매년 무이자로 납부
- 임차료의 감면 : 천재지변·자연재해등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재해 등으로 당해연도 수확량이 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의 평균수확량 보다 30%이상 감소하거나 수확할 수 없는 경우 (임차료 감면기준)

감 수 비 율	임 차 료 감 면 율
30%미만	0%
30% ~ 40%미만	45%
40% ~ 50%미만	55%
50% ~ 60%미만	70%
60% ~ 70%미만	80%
70% ~ 80%미만	95%
80%이상	100%

※ 감면기준 변경시는 변경을 적용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5조>

- 제15조(농지의 장기임대차) ①공사는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 ③공사는 그 소유농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거나 영농을 위탁할 수 있다.
- ④공사는 장기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요율 기타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第20條(長期賃貸借 干拓農地 등의 買入·賣渡事業) ①公社は 長期間 賃貸借되고 있는 干拓農地 및 開墾農地를 買入하여 耕作農業人에게 賣渡하거나 耕作農業人の 당해 農地購入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社의 農地買入은 當事者間的 協議에 의하되,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市長·郡守에게 賣買協議調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農地의 所有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市長·郡守의 賣買協議에 응하여야 한다.

□ 내용해설

- 농어촌진흥공사법에 의한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매도사업을 승계한 규정
- 매입대상농지
 - 1976. 12. 31이전에 준공되어 20년이상 장기간임대차하고 있는 간척 및 개간농지(답에 한함)
- 지원대상
 - 당해 간척·개간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 기타 매입·매도 절차는 농지매매사업 준용.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6조>

第16條(長期賃貸借 干拓農地 등의 買入) ①公社は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干拓農地와 開墾農地를 매입하여 경작농민에게 매도하거나 경작농민의 당해농지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規定에 의한 公社의 農地買入은 당사자간의 協議에 의하되,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市長·郡守에게 賣買協議調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農地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市長·郡守의 賣買協議에 응하여야 한다.

第21條(轉業農業人의 營農復歸 지원) ①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賃貸하고 轉業한 農業人이 轉業後 2年이내에 公社로부터 지급받은 賃貸料를 반환하고 營農에 復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賃貸借契約 期間에 불구하고 그 契約의 解止를 요청할 수 있다. 公社는 당해 農地가 第3者에게 賃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公社는 農地를 賣渡하고 轉業한 農業人이 轉業後 2年이내에 營農에 復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農地賣買事業資金의 지원 등 營農復歸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農復歸希望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 내용해설

- 농어촌진흥공사법에 의한 전업농가의 영농복귀지원에 관한 규정을 승계하되, 내용 중 “농가”를 “농업인”으로 수정하여 규정.
- 영농복귀자 요건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專業)한 자로서 전업후 2년 이내 영농복귀하여 버를 주작목으로 경영할 자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 제19조(전업농가의 영농복귀 지원)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고 전업한 농가가 전업후 2년 이내에 공사로 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를 반환하고 영농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당해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한 농가가 전업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구입자금의 지원등 영농복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복귀희망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第22條(農地의 交換·分合 등) ①公社는 營農의 能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農地의 交換·分合을 施行하거나 告先하고, 필요한 技術과 資金을 支援할 수 있다.

②農漁村整備法 第56條 내지 第60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交換·分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내용해설

- 농지의 교환·분합 지원의 목적
 - 농업인 상호간 교환·분합을 통하여 농지의 집단화를 촉진함으로써 영농의 능률화 및 생산성향상 도모
- 교환·분합 지원대상자 : 농지이용증진사업지구내 쌀전업농, 벼를 주작목으로하는 농업인,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일정구역에 대한 교환·분합사업의 청산금 지원대상자, 과수(감귤)를 주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제주도에 한함)
- 교환·분합 지원대상농지
 - 답끼리의 교환·분합(제주도의 경우 과수원끼리의 교환·분합 포함)
 - 벼를 주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의 밭과 타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답과 교환·분합
- 교환·분합 지원조건 : 교환·분합하는 농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되, 연리 4.5% ('99이전에는 지원농지의 3%), 10년 균분상환
- 집단환지(교환·분합)청산금지원
 - 지원대상자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자가 시행·알선하는 경우로서 교환·분합사업시행시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청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경지정리사업시행시 2필지 이상의 산재된 농지를 한곳에 집단화한 농업인 또는 원지환지를 받지 않은 농업인으로 집단환지에 기여한 농업인

- 지원대상 농지 : 교환·분합 또는 경지정리사업 지구내의 답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청산금징수 해당액
 - 지원조건 : 연리 4.5% ('99이전은 지원농지 3%), 10년 균분상환
- 지원요청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자는 환지계획(교환·분합계획)인가 승인을 얻은 때에는 청산금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를 조사하여 공사 시·군지부장(분사무소장)에게 신청
- 지원심사 및 지원여부 결정통지

공사 시·군지부장(분사무소장)은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의 자격과 집단환지여부 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를 통지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0조>

- 제20조(농지의 교환·분합등) ①공사는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거나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농지의 교환·분합에 관하여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34조 내지 제1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60조>

- 제56조(교환·분합의 시행) ①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 농지소유자 2인이상의 신청이 있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이하 “교환·분합”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②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이를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농림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분합계획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제2항, 제10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2인이상의 토지소유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교환·분합을 시행할 수 있다.

제57조(교환·분합의 결정방법) ①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농지소유자가 새로이 취득할 농지의 면적과 가격은 그가 상실한 농지의 면적과 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당해 권리가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교환·분합계획을 정하지 못한다.

③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분합계획에는 교환·분합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와 상실한 농지 및 소유권의 이전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외의 교환·분합계획의 결정방안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교환·분합의 효과)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된 교환·분합계획에 의하여 소유권은 이전되고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며 이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는 소멸되고, 지역권은 설정 또는 소멸된다.

제59조(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합) 농지에 관한 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대한 교환·분합에 있어서는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교환·분합의 청산금등) ①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발조합은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된 교환·분합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발조합은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교환·분합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第23條(農地賣買事業資金의 融資등) ①農林部長官은 第18條·第19條 및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賣買事業, 農地의 長期賃貸借事業, 農地의 交換·分合事業에 소요되는 資金을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管理基金에서 融資할 수 있다.

②公社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賣買事業과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長期賃貸借事業(公社가 造成한 農地와 國家로부터 出資받은 農地의 賃貸事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交換·分合事業에 따른 收入과 支出에 대하여는 公社의 一般會計와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融資를 받아 第18條·第19條 및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施行한 경우 그 결과 발생하는 損益은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管理基金에 귀속되며, 利益金의 納入과 損失金의 補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내용해설

- 농지관리기금의 용자 : 법제32조 및 제33조의 내용해설참조
- 제2항중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라 함은 농지매매, 농지임대차, 농지교환·분합 등 농지구묘화사업은 관리계정과 조성계정으로 회계처리함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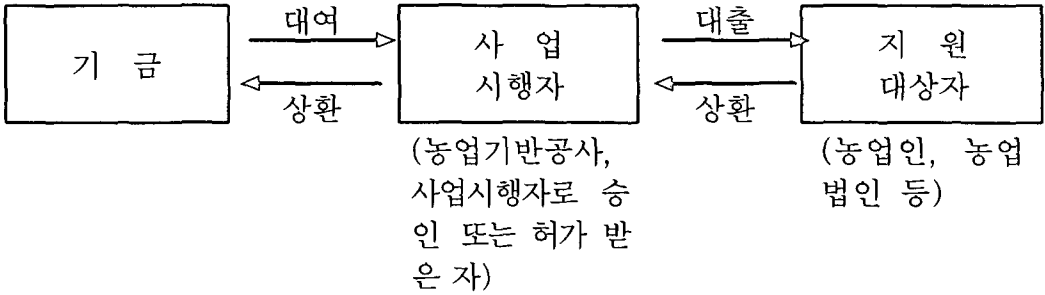
※계정별 주요재원에 관한 사항은 법제32조의 내용해설 참조

○ 사업별 지원조건

사업별	대출금리	상환기간	
		거치	상환
○농지매매자금	4.5%	-	20년
○농지임대차자금	-	-	5~7년
○농지교환분합자금	4.5%	-	10년

※ '98까지는 3% 적용

○ 용자금 지원 절차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7조>

제17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등) ①농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사업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임대차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사업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사업(공사가 조성한 농지와 출자받은 농지의 임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수익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 하여야 한다.

③제13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되며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4條(農地 등의 再開發) ①公社는 農地의 生産性 향상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地를 再開發하거나 地方自治團體 또는 農地所有者의 農地再開發事業에 필요한 技術과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②公社는 취득·所有하는 財産중 農漁村整備法에 의한 限界農地, 干拓地, 林野 등 不動産 및 農漁村整備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된 農業基盤施設을 다음 各號의 用途로 開發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賃貸 또는 賣渡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施行으로 인하여 발생한 收益金은 農業基盤施設의 유지·관리 및 農漁村地域開發事業에 사용하여야 한다.

1. 農地·草地 및 住宅 등 農漁村聚落用地
2. 農漁村의 所得增大를 위한 商·工業用地
3. 都·農間의 交流促進을 위한 農園
4. 農漁村休養地
5.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용도

③公社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計劃을 수립하여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내용해설

- 제1항은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불량농지를 우량농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공사가 기술지원 또는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융자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임.
- 제2항은 공사가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농지등의 재개발 사업으로 용도 폐지되는 농업기반시설과 그 부속토지 등을 이용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말함.
-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익금처리 :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에 사용

○ 사업계획 및 개발용도

사 업 계 획	개 발 용 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승인후 시행 · 사업계획개요 · 사업효율분석 · 사업수지예산 · 개발토지등의 처분계획	- 농어촌취락용지(농지·촌지·주택등) - 상·공업용지 - 농원 - 농어촌휴양지 - 기타 환경지구조성 개발등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

제21조(농지의 재개발등) ①공사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지를 재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지소유자의 농지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의 재개발에 관하여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사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외의 소득의 향상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불량농지, 간척지 또는 임야 등을 매입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를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농어촌개발에 투자하여야 한다.

1. 농지·초지 및 농어촌취락용지
2. 농어촌의 소득의 증대를 위한 공업용지
3.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원
4. 농어촌휴양지등

③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 3 節 財 務

第25條(資金調達) 公社は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이하 이 節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調達한다.

1. 資本金과 積立金
2.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3.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社債의 發行으로 造成되는 資金
4. 資産運用收入金
5. 기타 收入金

□ 내용해설

○ 공사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현행 농어촌진흥공사의 '98년도말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자본금 : 143,457백만원
- 적립금 : 76,726백만원(자본잉여금 17,543 이익잉여금 59,183)
- 차입금 : 2,565,282백만원
- 자산운용수익금 : 20,562백만원(이자수익 등)
- 기타 수익금 : 890,005백만원

※ 참고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은 없음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2조>

제22조(자금조달) 공사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운용수입금
5. 기타 수입금

第26條(借入金) 公社は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資金을 借入(外國으로부터의 借款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내용해설

- 차입금규정은 일시적인 자금사정 또는 신규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수요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의 재정상태의 적정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차입의 종류 : 당해연도에 상환하는 일시차입과 2년이상의 장기차입이 있음.
- 차입은 차입목적 및 규모, 상환조건, 차입기관 등의 관한 사항을 의결기관인 공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3조>

제23조(차입금) ①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상환할 수 있다.

第27條(社債의 발행) ①公社は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社債의 발행액은 公社の 資本金과 積立金の 合計額의 2倍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政府는 公社가 발행하는 社債의 元利金の 償還을 보증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社債發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내용해설

○ 사채의 발행목적

- 공사는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사업 추진,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확보 등의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조달하기 위해 채권발행 형식으로 사채발행을 함.

※ 사채와 유사개념으로 금전차입은 모두 타인자본의 조달방식이라는 점에서 같으나, 금전차입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금융업자로부터 조달하는 대상이 다름.

○ 농어촌진흥공사 정관상의 사채상환 및 금액

- 사채의 상환 : 5년이내
- 사채의 금액 : 권면액 1만원 이상

○ 제2항 중 “사채의 발행액”이라 함은 사채금액의 총액을 말하는데, 공사의 경우는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 상법상에서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사채의 장점

- 정부가 상환보증을 하므로 투자의 안정성보장
- 당해연도에 이익이 있든 없든간에 확정율의 이자지급보장

○ 사채발행절차

사채발행결정(이사회결)→ 사채응모 및 계약(사채청약서 기명날인)
→ 납입(응모자 인수사채금액)→ 사채발행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제24조(사채의 발행) ①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상법 제469조·제470조제1항·제471조·제472조제1항>

제469조(사채의 모집)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제470조(총액의 제한) ①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이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71조(사채모집의 제한)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의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한다.

제472조(사채의 금액) ①각 사채의 금액은 1만원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第28條(損益金の 처리) ①公社は 毎 會計年度 決算의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各號의 順으로 이를 처리한다.

1. 移越損失金の 補填
2. 資本金의 2分の 1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の 100分の 20이상을 利益準備金으로 積立
3. 資本金과 동일한 額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の 100分の 20이상을 事業擴張積立金으로 積立
4. 國庫에의 納入

②公社は 毎 會計年度 決算의 결과 損失이 생긴 때에는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擴張積立金으로 補填하고, 그 積立金으로도 부족한 때에는 同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利益準備金으로 補填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會計年度로 移越한다.

③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利益準備金과 事業擴張積立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資本金으로 轉入할 수 있다.

□ 내용해설

- “이익”이라 함은 매 회계년도(1. 1~12. 31) 결산 결과 흑자경영에 따른 공사의 재산이 자본과 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말하며, 이익금의 사용 제1순위는 전년도 결산 결과 결손이 발생되어 전년도의 회계에서 넘어온 이월손실금의 충당재원으로 쓰임.
-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법정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보전과 공사의 사업개척·경영유지·발전 및 공사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적립한도액을 규정한 것임.
 - 이익준비금 :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남은이익금 중 20%이상 적립 (법정자본금의 50%까지)
 - 사업확장적립금 : 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이익금 중 20%이상 적립 (법정자본금의 100%까지)

-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의 보전순서
 - ①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 ②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③ 미달액 차년도 이월
- 준비금의 자본전입 필요성
 - 준비금을 풀어서 자본으로 전입시켜 자본을 증가시키고, 법정준비금의 과다적립으로 인한 자본과의 불균형을 시정할 뿐만아니라, 공사의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신용도가 제고됨.
- 자본금 전입절차
 -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입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5조>

第25条(損益金の 처리) ①公社는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移越損失金の 補填
2. 資本金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の 10분의 2이상의 利益準備金에의 積立
3. 資本金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事業擴張積立金에의 積立
4. 利益의 配當

②公社는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事業擴張積立金으로 補填하고, 그 積立金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利益準備金으로 補填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연도로 移越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한국토지공사법 제24조>

第24條(損益金の 처리) (내용생략)

※ 농어촌진흥공사의 손익금 처리기준과 같음.

第29條(補助金)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農業基盤施設의 유지·관리 등 公社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公社에 보조할 수 있다.

□ 내용해설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으로서 국가관리가 필요하며, 농업인의 농업용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국가에서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보조금 교부절차 및 사용방법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함.
- 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 및 국고보조지원 실적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A)	국고보조금(B)	조합비	수익사업수입	적립금등기타	B/A
'89	110,832	66,773	19,725	7,436	16,898	60%
'90	134,425	71,262	21,888	7,428	33,847	53
'91	155,576	78,413	23,630	6,102	47,431	50
'92	154,425	85,058	24,978	6,992	37,467	55
'93	156,354	85,239	26,061	5,723	39,331	55
'94	183,793	94,668	26,421	7,017	55,683	52
'95	185,722	102,056	26,881	8,820	47,956	55
'96	194,355	106,491	27,844	7,175	52,825	55
'97	194,623	109,033	30,715	5,298	49,577	56
'98	192,901	91,682	31,461	8,294	61,464	48

※ 적립금 등 기타에는 차입금이 포함됨

○ 정부투자기관 운영비 등 보조금 운용현황

(’97 기준)

기 관 명	운 용 현 황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운영비등 국고보조 85%(’97기준 685억원정도)나머지 15%는 자체수익사업으로 운영 - 자체사업 : 해외전시관 운영수익, KOEX등 ○ 인 원 : 623명
한국석유개발 공사	○ 운영비등 국고보조 10%(380억 정도) 나머지는 사업수익으로 운영 ○ 인 원 : 859명
대한석탄공사	○ 운영비 국고보조는 없음 ○ 총매출액(2,100억원)의 50%(1,100억원 정도)가 탄가보조형식의 사업비 지원 ※ ’97결산의 경우 833억원 결손 ○ 인 원 : 4,186명
농수산물유통 공사	○ 기금사업(농안기금)으로 운영비 충당 ○ 인 원 : 948명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6조>

제26조(보조금) 농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농지개량조합법 제45조>

제45조(조합운영경비에 대한 지원) ①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조합비로 조합이 필요한 경비를 전부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국고에서 이를 보조한다.

②제1항의 국고보조에 대한 세부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등) ①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30條(公社의 會計特例) 公社는 農業基盤施設의 운영 · 관리에 관한 會
計는 따로 計定을 設置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 내용해설

○ 구분계리의 필요성

-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업무는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고 국고보조
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공사의 보조금에 대한 계정을 별도 설정하
여 농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수입지출을 명확히 구분계
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제3항>

제32조(기금의 운용·관리)

③제2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자금은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제28조(기금의 조성) 제4호

4.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납입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

제34조(별도계정의 설정등)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
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
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第 3 章 農地管理基金

第31條(農地管理基金의 設置) 政府는 營農規模適正化, 農地의 集團化, 農地의 造成 및 農地의 효율적 管理에 필요한 資金을 調達·供給하기 위하여 農地管理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 내용해설

-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목적
 - 비농가, 전업 또는 은퇴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쌀전업 농 등의 영농규모확대와 농지의 집단화, 농지장기임대차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공급
 - 농업인의 경영규모 확대로 쌀의 경쟁력제고와 자금달성
- 농지관리기금 연혁
 - '81. 3. 7 : 농지기금 설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대체농지조성비 징수 및 농지조성사업 추진
 - '86. 3. 5 : 농지구입자금지원 약속(농어촌발전종합대책 발표)
 - '88년부터 농어촌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
 - '90. 4. 7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정에 의거 농지관리기금 설치
 - 농지관리계정 : 농어촌지역개발기금중 농지구입자금 관련 채권, 채무인수
 - 농지조성계정 : 농지기금 흡수
 - '90. 7. 2 : 농어촌진흥공사 설립
 - 농지관리기금의 수탁관리 및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 시행
- 농지관리기금사업의 범위
 - 용자사업 : 농지매매, 농지구입, 농지임대차, 농지 교환·분합, 농지

재개발(한계 농지정비사업등)

- 투자사업 : 농지조성사업(서남해안간척, 대단위농업개발, 폐염전,유
휴지개발)
- 보조사업 : · 농지의 제도·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사·시
험·연구 및 홍보
· 농업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 농지재개발사업과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
합하는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예정지 조사·기본
조사·시험·연구와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및 사후
환경 영향조사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기술지원
-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지관리기금사무처
리규정” 참고 ('97. 12. 16, 농림부 훈령 제1257호)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7조>

제27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와 농
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第32條(基金의 造成)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出捐金
2.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3.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4. 農地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造成費納入金
5. 다른 基金으로부터의 出捐金
6. 農漁村整備法 第1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埋立地등의 賣却代金
7. 基金運用收益金

□ 내용해설

○ 기금조성의 주요재원

- 정부의 출연금 : '93년까지는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10,444억원 출연, '98년 일반회계에서 800억원 출연재개
- 정부의 차입금 : '94년부터 재정융자금과 국채관리기금에서 차입·충당
 - ※ 국채관리기금 차입 이자율 13%내외, 재정융자특별 융자금 이자율 (국채관리기금 10~18%,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5~9.5%)
- 농지조성비 납입금 : 기금조성의 주된 재원으로 전체의 60~70%차지
 -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 소유자가 농지외 타용도로 전용시 그에 상응하는 농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즉 농지조성비 징수액을 말함
 - 타용도 전용은 주로 산업용 및 주택용 토지임.
(연평균 2만ha→2만7천ha로 증가추세였으나 최근 IMF등의 경기 침체로 농지전용이 크게줄어 농지조성비 수납액이 대폭 감소추세)
- 매립지등의 매각대금 : 국가가 시행한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농업인에게 매각한 대금(대금납부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 상환)

※ 농어촌정비법 제15조 제4항을 부칙으로 신설

- 기금운용수익금 : 재정용자 특별회계 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금융기관예치등의 이자수익(예탁이자율 연리 5~6%)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8조>

제28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납입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기금운용수익금

□ 참고자료

○ 농지관리기금 조달·운용 실적 <'98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97까지	'98년도		실적율 (%)	누 계	
			계 획	실 적			
계 (A + B)		6,447,194	919,417	943,221	103	7,176,649	
농지 관리 계정	조 달	○ 정부출연금	1,044,441	80,000	80,000	100	1,124,441
		○ 재특차입금	791,191	-	-	-	791,191
		○ 국채관리기금차입	1,852,057	190,700	190,693	100	2,042,750
		○ 융자금 회수등	951,716	265,402	274,421	103	1,226,137
		○ 전 기 이 월	-	59,336	59,336	100	-
	소 계 (A)		4,639,405	595,438	604,450	102	5,184,519
	운 용	○ 규모화사업비	2,948,540	359,849	359,849	100	3,308,389
		- 농지매매자금	1,968,183	228,480	228,480	100	2,196,663
		- 농지구입자금	686,907	-	-	-	686,907
		- 교환분합자금	31,919	7,894	7,894	100	39,813
- 농지임대차자금		261,531	123,475	123,475	100	385,006	
용	○ 채권원리금상환등	1,499,220	178,094	177,593	100	1,676,813	
	○ 규모화사업수수료	132,309	50,855	50,855	100	183,164	
	○ 차 기 이 월	59,336	6,640	16,153	243	16,153	
농지 조성 계정	조 달	○ 농지조성비	1,611,896	100,000	108,725	109	1,720,621
		○ 조성토지매각대	33,947	26,957	27,093	101	61,040
		○ 예탁금회수	-	15,000	15,000	100	15,000
		○ 수입이자등	161,946	27,592	33,523	117	195,469
		○ 전 기 이 월	-	154,430	154,430	100	-
	소 계 (B)		1,807,789	323,979	338,771	105	1,992,130
	운 용	○ 농지조성사업비	1,473,763	283,982	282,617	100	1,756,380
		○ 농지재개발	5,966	4,400	4,400	100	10,366
		○ 기본조사비등	53,265	7,697	7,035	91	60,300
		○ 기금관리비	5,365	809	808	100	6,173
○ 재정예탁		115,000	-	-	-	115,000	
용	○ 차 기 이 월	154,430	27,091	43,911	162	43,911	

第33條(資金의 借入) 農林部長官은 基金運用상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財政融資特別會計·金融機關 또는 다른 基金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 내용해설

-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융자금을 말하며, “금융기관”이라 함은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함.
- 자금의 차입현황('97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내역	'97까지	'98	누계금액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791,191	-	791,191
-국채관리기금 차입금	1,852,057	190,693	2,042,750
계	2,643,248	190,693	2,833,941

※ 차입금 상환액(이자포함) 1,676,813백만원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9조>

第29條(資金의 借入) 農林部長官은 基金運用상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財政融資特別會計·金融機關 또는 다른 基金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第34條(基金의 用途) ①基金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用途로 運用한다.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賣買事業 등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
 2.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長期賃貸借事業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 및 獎勵金의 지급
 3.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交換·分合事業과 農漁村整備法에 의한 農業基盤整備事業施行者가 施行·알선하는 農地의 交換·分合 및 集團換地事業의 清算金의 融資 및 필요한 經費의 支出
 4.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再開發事業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 및 投資
 5. 農漁村整備法에 의한 限界農地등의 整備事業의 補助·融資 및 投資
 6. 農地造成事業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 및 投資
 7. 農地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造成費의 還給 및 同法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褒賞金의 지급
 8. 基金運用管理에 필요한 經費의 支出
 9. 기타 基金設置目的의 달성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資金의 支出
- ②第1項 各號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에서 補助金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사업 실시결과 발생한 缺損金은 이를 基金의 부담으로 損費處理할 수 있다.
- ③基金의 餘裕資金은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運用할 수 있다.
1. 財政融資特別會計 기타 다른 基金에의 預託
 2. 國·公債의 買入
 3. 金融機關에의 預置

내용해설

- 농지관리기금법의 종류에는 융자사업, 투자사업, 보조사업이 있는바,

사업별 지원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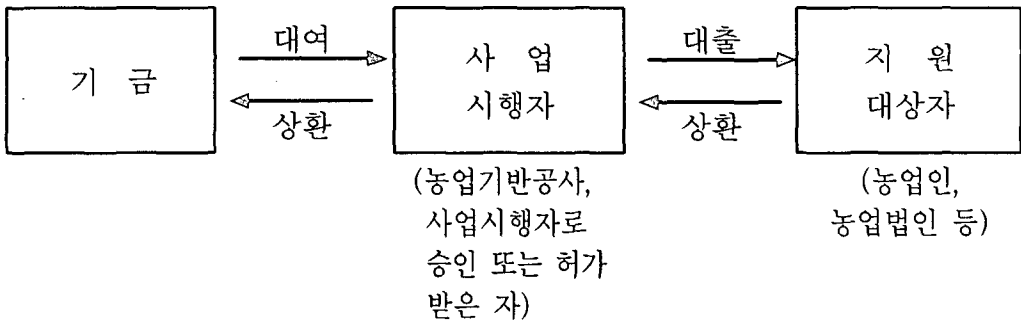
(1) 용자사업

- 대상사업 : 농지매매, 농지구입, 농지임대차, 농지 교환·분합, 농지재개발(한계농지정비사업 등)
- 사업별 용자조건

계 정 별	사 업 별	대출금리	상환기간		비 고
			거 치	상 환	
농지관리계정	○ 농지매매자금	4.5%	-	20년	'93까지지원
	○ 농지구입자금	4.5%	2년	18년	
	○ 농지임대차자금	-	-	5~7년	
	○ 농지교환분합자금	4.5%	-	10년	
농지조성계정	○ 농지재개발자금		2년	2년	

※ '98까지 금리는 3%

○ 용자금 지원 절차



○ 용자금의 상환

- 상환방법 : 약정서상의 상환계획에 따라 균등분할 상환
- 용자금의 조기회수 : 농림부장관은 기금을 용자받은 자가 용자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법 제38조)
- 연체금 : 원리금상환계획에 의한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할부원금 또는 이자액과 미상환잔액에 대한 이자액에 대하여 상환일 당시의 농협중앙회의 여신규정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

- 융자금 상환의 연기 :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사업시행자가 기금수탁관리자(공사)에게 연기요청을 하면 기금수탁관리자는 장관(기금운용관리자)에게 승인을 얻어 연기 조치
- ※ 단, 농지임대차자금은 감면(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2) 투자사업

- 대상사업 : 농지조성사업(서남해안간척, 대단위농업개발, 폐염전, 유희지 개발)
- 농지조성사업 투자의 범위 : 농지조성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개발비(순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공사감리비, 기본조사비를 제외한 측량설계비등)
- 매각대금의 기금납입
 - 기금으로부터 개발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기금에 납입
 - 매각절차
 - 사업시행자가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각

(3) 보조사업

- 대상사업
 - 농지의 제도·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사·시험·연구 및 홍보
 - 농업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 농지재개발사업과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예정지 조사·기본조사·시험·연구와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및 사후환경 영향조사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기술지원
- 지원절차 :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교부 신청
 - 보조금의 교부결정 : 농림부장관은 다음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
 - 법령, 예산 및 목적에의 적합성 여부
 -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
 - 기타 농림부장관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등
 -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장관→보조사업시행자)
 - 보조사업시행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통지 받았을때에는 관련문서 사본과 사업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
 - 보조금의 청구 및 교부 (보조사업시행자→기금수탁관리자)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경정교부결정서를 교부받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
 - 보조사업의 검정 (장관)
 - 농림부장관은 실행검정 후 실행검정조서를 보조사업자 및 기금 수탁관리자에게 통지
 - 보조금의 금액 확정 : 농림부장관은 실행검정결과 보조사업실적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고 보조금교부확정서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
 - 보조사업비 정산 (기금수탁관리자)
- 제3항중 “여유자금”이라 함은 ①일상적인 운영금 ②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용자·투자 및 보조에 필요한 자금 ③목적사업수행을 위한 토지·건물·시설등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함.

- 사업실시결과 결손금에 대한 손비처리 대상범위
 - 법 제18조·제19조에 의한 농지매매사업, 장기임대차사업
 - 법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으로 농지의 재개발사업과 농지조성사업을 시행한 자가 그 토지등을 매각한 대금이 당해 총사업비에 미달하여 발생하는 부족액
 -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천재지변등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인한 결손금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제31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매매사업과 농지구입자금의 용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및 장려금의 지급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시행·알선하는 농지의 교환·분합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의 용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및 투자
5.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투자 및 용자
6.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및 용자
7.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환급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8. 기금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9. 기타 기금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실시 결과 발생된 결손금은 이를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재정융자특별회계 기타 다른 기금에의 예탁
2. 국·공채의 매입
3. 금융기관에의 예치

第35條(基金의 운용·관리) ①基金은 農林部長官이 운용·관리한다.

②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운용·관리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 다만, 基金을 農業人에 대한 貸出金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農業協同組合法과 그 中央會 또는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畜産業協同組合法과 그 中央會 등 金融機關을 통하여 融資한다.

③第32條第4號 및 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되는 資金은 따로 計定을 설치하여 計理하여야 하며, 각 計定の 計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基金은 企業會計의 원칙에 따라 計理하여야 한다.

□ 내용해설

- 기금운용·관리자 : 농림부장관
- 기금수탁관리 : 농업기반공사
- 제3항 중 “자금은 별도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하여야 하며”라고 함은 기금운용관리자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농지관리계정과 농지조성계정으로 구분계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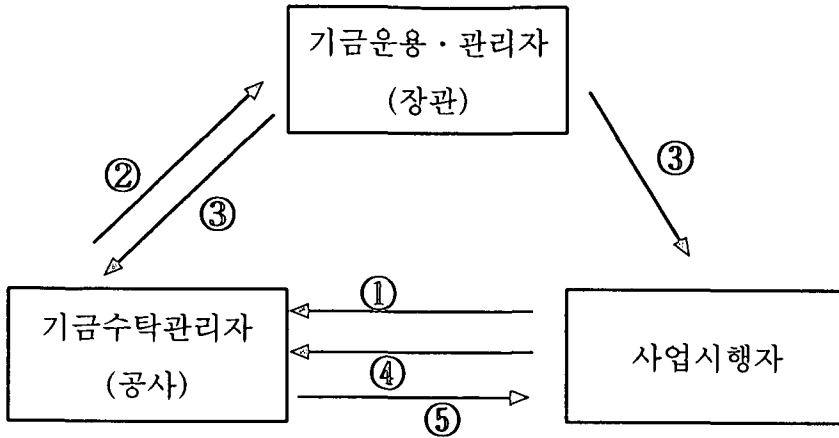
- 기금계정의 구분계리

구분계리	사 업 내 용
농지관리계정	농지매매·구입자금지원·임대차·교환분합
농지조성계정	농지조성사업, 농지재개발사업

- 기금계정의 설치

- 기금운용관리자(장관) : 한국은행
- 기금수탁관리자(공사) : 농협중앙회

○ 기금의 지원체계



※ 범 례

- ① 사업시행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사업계획 및 월별자금요구서 제출
-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운용관리자에게 월별수입·지출계획서 제출
- ③ 기금운용관리자는 기금수탁관리자와 사업시행자에게 월별·분기별 자금집행계획 통보
- ④ 자금집행계획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자금교부신청
- ⑤ 기금수탁관리자는 자금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자금집행계획 통보 내역에 따른 자금을 교부

○ 공사위탁 업무내용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 법 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납입금 징수 업무
-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융자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업무
-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
-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제4항 중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고 함은 기금에 관한 운영성과 및 변동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해 대차대

조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함.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第32條(基金의 運用·管理) ①基金은 農林部長官이 運用·관리한다.

②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사가 위탁 관리한다.

③제2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자금은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④基金은 企業會計의 原則에 의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第36條(基金運用審議會의 設置) ①基金運用計劃 기타 基金의 運用·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農林部에 農地管理基金運用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議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農林部次官이 委員長이 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議會委員에는 農業人·農業人團體의 代表와 各界의 專門家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審議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내용해설

○ 농지관리기금운용 심의회 구성(15인이내)

- 당연직(2인)

· 위 원 장 : 농림부차관

· 부위원장 : 농지관리기금 담당 농림부 1급 공무원(농업정책국장)

- 위촉위원(13인, 임기 2년)

· 재정경제부, 농림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 농업인단체의 임원, 농업기반공사의 이사

· 농업인, 학계 전문가

- 간사 : 농지관리과장

○ 농지관리기금 운용 심의회 기능

-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사업별 융자한도 및 조건, 보조금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금사용요구서 제출 등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수립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 이 법에서는 현행 공사법의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은 중복조문으로 불포함 되었음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3조>

第33條(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①기금운용계획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지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구성·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심의회에는 농민·농민단체의 대표와 학계등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第37條(基金의 會計機關) ①農林部長官은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所屬公務員중에서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任命하여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관리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公社에 委託하는 경우에는 公社의 任員중에서 基金出納擔當任員을, 그 職員중에서 基金出納員을 任命할 수 있다. 이 경우 基金出納擔當任員은 基金出納命令官의 職務를, 基金出納員은 基金出納公務員의 職務를 행한다.

③會計關係職員等の責任에關한法律중 歲入徵收官과 財務官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命令官 또는 基金出納擔當任員에게, 支出官과 出納公務員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公務員 또는 基金出納員에게 準用한다.

내용해설

○ 기금의 회계기관

기금운용관리자 (장관)	기금수탁관리자 (공사)
- 기금출납명령관 : 농지관리과장	- 기금출납담당임원 : 기금출납담당이사
-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담당서기관 (사무관)	- 기금출납원 : 기금관리처장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개정시행('99. 2. 5)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의 기금출납담당 임원은 이사로 개편됨.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

第35條(基金의 會計機關) ①農林部長官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사의 社長에게 委託할 경우에 公社의 執行幹部중에서 基金出納擔當本部長을, 그 직원중에서 基金出納員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금출납담당본부장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 또는 기금출납담당본부장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에게 準用한다.

第38條(融資金의 回收) 農林部長官은 基金을 融資받은 者가 融資條件에 위반한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償還期日전이라도 融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回收할 수 있다.

□ 내용해설

- 여기서 “농림부장관”이라 함은 이 법중 농지관리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운용관리자를 의미함.
- “기금을 용자받은 자”라 함은 기금운용관리자(장관)와 기금수탁관리자(공사)로부터 용자받은 사업시행자를 지칭하는데, 여기서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금수탁관리자가 아니고 사업시행자로서의 공사사업부서를 의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의미함.
- 용자조건 위반사유
 - ① 대출금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 장비, 설비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형질변경한 경우
 - ③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④ 대출금 지원후 사업포기등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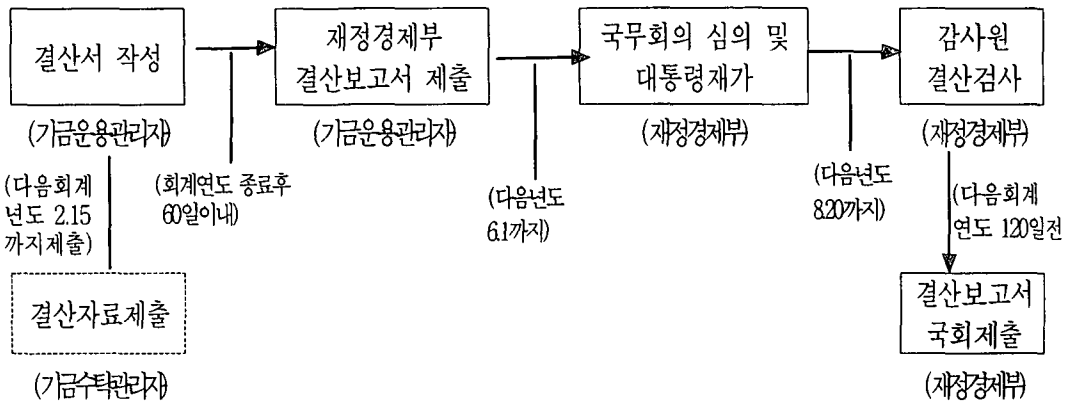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6조>

第36條(融資金의 회수) 農林部長官은 기금을 용자받은 자가 용자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第39條(基金의 決算) 農林部長官은 每 會計年度에 當해연도 基金運用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 會計年度 종료후 60日이내에 財政經濟部長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내용해설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7조>

第37條(基金의 決算) 農林部長官은 每 회계연도에 當해연도 基金運用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財政經濟部長官에 게 제출 하여야 한다.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第9條(基金決算) ①기금관리주체는 회계년도마다 공공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기금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의심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에 기금관리주체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 년도 6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결산을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년도 8월20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을 회계년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금결산보고서의 내용 기타 기금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 4 章 補 則

第40條(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과의 관계) 公社의 組織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내용해설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제정목적
 -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성격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는 농업기반공사 설립법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기재사항
 - 이사회 심의·의결사항등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명·직무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0조>

第40條(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과의 관계) 公社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41條(登記囑託의 代位) 公社가 第10條第1項第9號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받아 施行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취득한 不動産에 관한 權利를 不動産登記法 第35條 및 同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하는 경우 公社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를 代位하여 登記를 촉탁할 수 있다.

□ 내용해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라고 함은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의제받아 그 위치에서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함.
이러한 경우는 공사가 국가대행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임.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8조제2항>

②공사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동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부동산등기법 제35조·제36조>

제35조(국, 공유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36조(동전) ①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에 대하여할 등기는 그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

는 서면 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②관공서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경, 경정 또는 처분의 제한에 대하여 할 등기는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일 때에는 직권으로써, 등기의무자일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공서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소멸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第42條(다른 法律의 適用排除 및 特例) 公社가 第18條·第19條 및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農地法 第9條·第24條 및 第26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내용해설

- 원활한 영농규모적정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사가 농지매매사업(법제18조),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법제19조), 농지등의 재개발사업(법제24조)을 시행하는 경우 농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위탁경영금지, 동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의 기간, 동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인의 묵시의 경신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임.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8조>

제38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및 특례) ①공사가 제13조·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농지법 제9조·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지법 제9조·제24조·제26조>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6월이상의 국외여행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제24조(임대차의 기간) ①임대차의 기간은 1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나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임대차의 기간은 그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임대차의 기간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짧거나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단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묵시의 경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3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경신의 거절 또는 임대차조건의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第43條(水利稷) ①市·道知事は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公社管理地域의 農業基盤施設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農業基盤施設의 利用者를 稷員으로 하는 水利稷를 組織·운영하고 農業基盤施設 유지·관리업무를 委託할 수 있다.

②水利稷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特別市·廣域市 및 道の 條例로 정한다.

③水利稷는 市·道知事の 認可를 받아 稷員으로부터 農業基盤施設의 유지·관리를 위한 經費를 徵收할 수 있다.

④水利稷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經費를 滯納한 者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市長·郡守에게 그 徵收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水利稷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당해 市長·郡守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市長·郡守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經費의 徵收를 의뢰받은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 내용해설

○ “수리계”라 함은 종전 농지개량조합법상의 “농지계량계”를 현실에 적합한 명칭으로 개칭하여 규정한 것임.

※ 농지개량계의 설치권 및 경비부과 인가권 : 시·도지사(당초 위임 사무에서 '91~'92년도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심의결과 시·도지사의 고유사무로 이양됨)

○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전 농지개량계와 같음.

○ 종전 농지개량계의 관리면적 및 시설

- 수리답(881,631ha)의 20%를 시·군관리

농지개량계	면적	계원수	수원공				
			계	저수지	양·배수장	보	관정
13,683 개소	175,501 ha	445,560 명	13,725	7,019	1,187	3,212	2,307

- 종전 조합과 농지개량계의 경비부과기준
 - 조합 : 수혜면적 10a당 6,300원 수준
 - 농지개량계 : 농지개량계 구역 10a당 4,470원 수준('96 기준)
 - ※ 조합의 경우 '88년부터 농업인 부담경감 차원에서 조합비 대폭 인하
 - ('87)26kg/10a→('88)10/10a→('89)5kg/10a→('96)6,000원/10a→('97)6,300원/10a
- 종전 농지개량계 조직대상
 - 수혜면적 5ha이상 계원 5인이상의 수리시설
 - 상기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리시설
- 종전 농지개량계 운영절차
 - 예산편성지침시달 (군수→개량계) : 회계년도개시 60일전
 - 예산 및 경비부과안 제출(개량계→군수) : 회계년도개시 45일전
 - 예산 및 경비부과안 승인(군수→개량계) : 회계년도개시 30일전
 - 결산서 제출(개량계→군수) : 회계년도 종료후 45일전
 - 결산 승인(군수→개량계) : 회계년도 종료후 60일전
- 종전 농지개량계 경비부과 내용
 - 정상적인 시설유지관리비(인건비, 전력요금, 유류대, 공구구입비등)
 -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설계, 자재대, 공사위탁시 제경비등)
 - 불의의 시설손괴에 대비한 적립금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제88조(농지개량계) ①시·도지사는 조합구역외에 있는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반시설의 수혜자를 계원으로 하는 농지개량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농지개량계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④제5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농지개량계”로 본다.

第44條(造成土地의 處分特例) 國家는 農漁村整備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가 施行한 農業基盤整備事業으로 造成된 財産중 農業基盤施設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財産은 이를 公社에 無償으로 讓與할 수 있다.

□ 내용해설

-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한 재산”이라 함은 매립지·간척지·개간지·토취장등 토지와 기타물건을 말함.
-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고 함은 국가가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한 재산을 공사에 현물로 증여 할 수 있음을 뜻함.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1조>

제41조(조성토지의 처분특례) 농림부장관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중 농지개량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이를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

제15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토취장등 토지와 기타 물권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한다.

第45條(農業基盤施設管理權의 設定 및 登錄) ①農林部長官은 公社에 대하여 農業基盤施設管理權을 設定할 수 있다.

②公社는 農業基盤施設管理權의 設定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林部에 비치하는 農業基盤施設管理權 登錄簿에 登錄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登記의 效力을 가진다.

第46條(農業基盤施設管理權의 성질) 農業基盤施設管理權은 이를 物權으로 보며,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法중 不動産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내용해설

-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설정 대상
 - 국가가 시행하여 조성한 시설로서 방조제, 하구둑 및 그 부속시설
-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설정·등록효과
 - 장관이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을 설정하면, 농림부에 비치된 등록부에 등재하므로써 등기의 효력을 가짐.
- 제3항 중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진다”라 함은 등기효력으로 의제되어 관리권의 권리변동으로 인한 사용·수익·양도 등을 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됨을 말함.
- “물권으로 보며”라는 뜻은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가로 부터 설정받은 관리권은 공사가 배타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함.
 -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설정은 주로 공사에 양도 또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되, 농업기반시설자체의 처분권까지 부여됨은 아님.
- 관리권의 성질이 배타적인 물권이므로 부동산차원에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2조·제43조>

第42條(農業生産基盤施設管理權의 성질)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권은 이를 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法중 不動産에 관한 규정을 準用한다.

제43조(농지개량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①농림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농지개량시설의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공사는 농지개량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에 비치하는 농지개량시설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진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9조·제20조>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권을, 환경부장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가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공사는 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등) ①시설관리권은 이를 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설관리권은 양도·출자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③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을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47條(資料提供 등의 요청) 公社は 관계 行政機關 또는 기타 農業人에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資料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第48條(關係書類의 閱覽 등) ①公社は 第10條의 사업을 施行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登記所 기타 관계 行政機關에 대하여 書類의 閱覽·複寫 또는 謄·抄本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第10條第1項第4號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無料로 요청할 수 있다.

②公社は 農地管理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行政機關에 대하여 土地에 대한 電算資料의 照會·檢索 또는 複寫를 요청할 수 있다.

□ 내용해설

- 공사는 국가대행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사업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읍·면사무소 및 기타 이해 관계인에게 사업관련 자료의 요청을 할 수 있음.

예) 각종 통계자료, 토지대장, 임야대장, 농지원부 등

-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사업,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합에 관한 사업 등 영농규모적정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무료로 자료요청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제45조>

제44조(자료제공등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행정기관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관계서류등의 열람등) ③공사는 제12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등·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사업

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공사는 농지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의 조회·검색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100조제1항 및 제4항>

제100조(측량·검사 또는 서류등 열람)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 사업에 관한 토지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토지와 연안해면의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면허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등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④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토지 및 연안해면을 관할하는 등기소·세무관서 또는 구·시·도·면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부책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第49條(監督) 農林部長官은 公社의 經營目標 達成 및 經營效率化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公社의 업무를 指導·監督한다.

□ 내용해설

- 농림부장관의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및 권한
 - 주무부장관으로서 사장의 임명제청권(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공사경영목표 설정에 관한 심사·조정권(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경영평가 결과 시정요구권(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권(공사정관)
 - 공사사업의 승인 및 감독
 - 감사원 위탁감사권(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업무중 위탁업무 등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8조>

제48조(감독) 농림부장관은 공사의 사업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第50條(農地管理委員會에 대한 협조의 요청) ①公社는 農地の 賣買 및 賃貸借資金의 融資 등의 事業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農地法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管理委員會에 農地去來價格의 調査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내용해설

- 농지관리위원의 역할 임무(농지법 제48조 관련)
 - 농지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선정심의
 -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 기타 농지관리에 관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공사와 농지관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 농지의 매매 및 임대차사업과 관련된 업무
 - 공사의 영농규모적정화사업과 관련된 업무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7조>

제47조(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협조의 요청) ①공사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및 농지구입자금의 용자 등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51條(罰則)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8條第2項, 第20條第1項, 第21條第2項 또는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을 지원받거나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料를 지급받은 者는 지원금액 또는 지급 받은 賃借料의 100分の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내용해설

- 벌칙규정은 정부의 농지관리기금 지원실적의 사후관리에 따른 규제 조치로서 해당 법규위반자에 대하여 형벌 중 재산형에 속하는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참고로 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산형에는 벌금, 과료, 몰수가 있음.

- 여기서 “벌금”이라 함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형벌로서 재산형 중에서 가장 중함.

한편 과료는 경미한 범죄로서 부과되는 금액(2,000원~50,000원미만)이 적다는 점에서 벌금과 구별되며, 몰수는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구별됨.

※ 벌금액 : 지원금액과 임차료의 100분의 20

- 유사개념

과태료는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고 행정형벌로서 행정상 제재 수단임.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50조>

第50條(罰則) 虛偽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資金을 지원받거나 제21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賃借料를 지급받은 者는 지원금액 또는 지급받은 賃借料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3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내용해설

- 법시행일은 법률의 발효일을 명확히 법제화하기 위하여 2000년1월1일로 하되, 설립위원회의 설치는 법공포일부터 가능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기반공사의 설립준비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여기서 시행일은 농업기반공사법이 발효되는 법률효력 개시일로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대통령재가를 득하여 공포한 후 특정일자부터 시행하게 하는 규정방식임.
 - ※ 당초에는 이법의 시행일을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였으나, 농림해양수산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 단서 중 “공포한 날”이라 함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후 대통령재가를 얻어 관보에 게재된 날을 말함.
 - ※ 법률공포일 : 1999. 2. 5 (법률제5759호)
 - ※ 참고로 시행일을 규정하는 방법에는 ①공포일 즉시 시행 ②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시행 ③특정일자부터 시행 ④특정사건과 관련하여 시행 ⑤시행일을 하위법령에 위임규정하여 시행하는 입법례가 있음.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1조>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은 이 法에 의한 公社의 設立登記를 완료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廢止法律) 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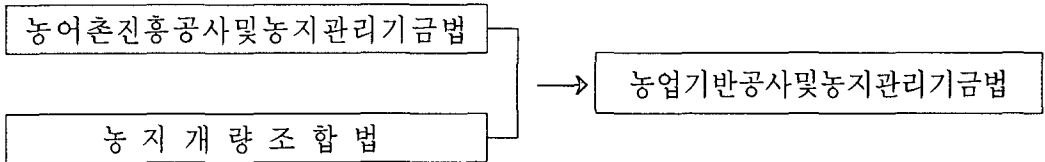
1.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2. 農地改良組合法

□ 내용해설

- 법률의 폐지는 해당법률의 법적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중지시켜 법률 그 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대체입법에 의해 폐지됨.
- ※ 일반적으로 법률의 폐지사유는 법률 제정시부터 법률효력기간을 한시적으로 규정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연 소멸되는 한시법률의 경우와 대체 입법되는 법률에 의해 관련 법률을 폐지시키는 경우가 있음.
- 상기폐지 법률의 실효시점은 이법의 시행일인 2000년1월1일이 됨.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과 『농지개량조합법』은 폐지하고, 대체입법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통합

<폐 지>

<제 정>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農村近代化促進法 및 農地改良組合育成에 관한特別措置法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종전의 農地改良組合育成에 관한特別措置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債에 대한 國庫補助에 관한 規定은 그 長期債의 償還이 完了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效力을 가진다.

○ 폐지법률의 연혁

구 분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
법률안제출형태	정부입법	(좌 동)
제 정 공 포 일	1990. 4. 7 법률 제4229호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제 정 목 적	농어촌진흥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기반의 조성·정비와 농가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농민의 자주적인 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이용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촌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농민의 경제적자립과 이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개 정	7차 개정 - '93. 12. 31 법률 제4675호 (국채법) - '94. 11. 11 법률 제4787호 - '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 '94. 12. 22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 '96. 8. 8 법률 제5153호 (정부조직법) - '96. 12. 12 법률 제5170호 (재정융자특별회계법) - '97. 12. 13 법률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3차 개정 - '96. 8. 8 법률 제5153호 (정부조직법) - '96. 12. 12 법률 제5170호 (재정융자특별회계법) - '97. 12. 13 법률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폐 지 일 자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시행일	(좌 동)

第3條(設立委員會의 設置) ①증전의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한 農漁村振興公社(이하 “農漁村振興公社”라 한다), 증전의 農地改良組合法에 의한 農地改良組合 및 農地改良組合聯合會(이하 “農地改良組合” 및 “農地改良組合聯合會”라 한다)의 解散과 公社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公社設立委員會(이하 “設立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한다.

②設立委員會는 農林部長官이 위촉하는 委員長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政府, 農漁村振興公社·農地改良組合·農地改良組合聯合會 代表, 農業人·農業人團體代表 및 學界등 專門家를 참여 시켜야 하며, 委員長은 農林部次官이 된다.

③設立委員會는 公社의 定款을 작성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후 公社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 내용해설

○ 설립위원회 임무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등 3개기관의 해산과 신설공사 설립에 관한 사무처리
- 정관작성 및 인가신청
- 3개기관 해산등기 및 신설공사 설립등기
- 기타 설립사무국 업무 승인

○ 설립위원회 구성 : 정부, 3개기관 당사자, 농업인 대표 등 15인으로 구성(위원장1, 부위원장2, 위원13)

○ 운영기간 : 법률공포일부터 새공사 설립등기후 업무인계인수일

□ 참고자료

○ 설립위원회 설립사무국 구성 및 운영

- 설치경위 : 법부칙제3조에 의거 공사설립위원회 1차회의시('99.2.5) 설립위원회의 실무활동을 뒷받침할 설립사무국운영규정을 의결 2.8 부터 실무작업 착수
- 구성인원 : 총26명 (농림부7, 농진공8, 농조6, 농조연5)으로 하되, 업무 의 효율을 위하여 기획반, 법령반, 총무반, 교육홍보반으로 업무분장(※사무국장 : 농촌개발국장, 총괄반장 : 개발기획과장)
- 운영기간 : '99. 2. 8 ~ '99. 12. 31
- 주요임무사항 :
 - 하위법령 및 사규제정
 - 사업계획수립
 - 조직체계구축방안 검토(직급·보수·인사·회계 등)
 - 자산실사 및 인계인수서 작성
 - 기타 설립위원회 지시사항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7조>

第7條(設立委員會의 設置) ①農業振興公社의 解散과 공사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公社設立委員會(이하“設立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한다.

②設立委員會를 農林水産部長官이 위촉하는 7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農林水産部長官이 委員長이 된다.

③設立委員會는 公社의 定款을 작성하여 農林水産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후 公社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農業振興公社는 이 法에 의한 公社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清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본다.

第4條(設立費用) 農漁村振興公社, 農地改良組合, 農地改良組合聯合會의 解散費用 및 公社의 設立費用은 公社가 이를 부담한다.

第5條(業務引繼) ①設立委員會는 公社의 設立登記후 公社의 社長에게 지체없이 業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設立委員은 解囑된 것으로 본다.

□ 내용해설

- 설립비용은 공사창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공사설립예산(비용예산과 자본예산)을 편성하여 설립위원회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설립위원회 및 설립사무국 운영경비(사무용품대, 회의비, 전산장비등)
 - 광고선전비(홍보용VTR제작, 리후렛 제작,교육훈련비)
 - 등기비용(해산등기, 설립등기에 따른 법무사수수료)
 - 용역수수료(조직진단등 전문기관 업무용역)
- 제5조제2항 중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라 함은 설립위원의 위촉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설립등기 직후 인계인수서에 직접날인 또는 서명이 끝난 때에 자동적으로 설립위원으로서의 직위 및 직무가 종료됨을 말함.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8조·제9조>

第8條(設立費用) 農業振興公社의 解散費用 및 公社의 設立費用은 公社가 부담한다.

第9條(業務引繼) ①設立委員會는 公社의 設立登記후 公社의 社長에게 지체없이 業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設立委員은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6條(任員에 관한 措置) 이 法 施行과 동시에 農漁村振興公社, 農地改良組合 및 農地改良組合聯合會의 任員은 任期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農地改良組合長등 任員에 대하여는 殘餘任期와 業務遂行能力등을 감안하여 公社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職位에 상응한 職務의 부여등 필요한 禮遇를 한다.

□ 내용해설

- 제6조 본문중 “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라 함은 3개기관 임원의 임기는 그 잔여임기에 불구하고 신설공사법 시행일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의제한 것으로써 농업기반공사의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잔여임기 동안의 임원의 지위를 상실케 한 것임.
- 3개기관 임원 및 임기 현황

기 관 명	임 원 및 임 기			
	상 임	임 기	비 상 임 · 명 예 직	임 기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임명직) 이사 6인(사장포함) 감사(임명직) 1인 ※임명권자 : 대통령, 장관	3년 3년 3년	이사(임명직)7인 ※임명권자 :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3년
농지개량조합	조합장(선거직) 105인 ※ 조합원 직접선출	4년	이사(선출직) 6~10인이내 감사(선출직) 2인 ※ 총회에서 선출	4년 3년
농지개량조합 연 합 회	회장(선출직) 감사(선출직) ※ 총회에서 선출 부회장(임명직) 이사 2인 ※ 총회동의, 회장임명	4년 3년 4년 4년	이사(선출직) 4인 감사(선출직) 1인 ※ 총회에서 회원조합장 중 선출	2년 3년

○ 선출직 조합장에 대한 특례조항

- 부칙제6조 단서는 임기가 단축되는 농지개량조합장의 잔여기간에 대해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직무부여등 보상차원의 적절한 예우를 취하도록 특례조항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 명시

※ 농림해양수산위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97년도에 의료보험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공단과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될 때에 부칙에 규정했던 입법례를 참고, 추가 반영

♻ 입법례 : 국민의료보험법 부칙제7조(직원의 고용등)

第7條(職員の 雇傭等) 이 法 施行당시 公務員및私立學校敎職員 醫療保險 管理公團의 職員은 公團에 雇傭된 것으로 보며, 그 任員의 경우에는 殘餘任期에 한하여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報酬와 職務를 부여할 수 있다.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8조>

第8條(代議員任期에 관한 特例) 이 法 施行후 1997年度중에 선출되는 代議員의 任期는 이 法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2001年3月31日에 만료한다.

第7條(職員의 承繼) 公社가 設立된 때에는 그 設立당시의 農漁村振興公社, 農地改良組合 및 農地改良組合聯合會의 職員은 公社의 職員으로 본다. 다만 農地改良組合의 職員은 農業基盤施設 유지·관리등 地域의 特性을 감안하여 配置하여야 한다.

□ 내용해설

○ 직원의 권리의무등 포괄승계 및 시점

- 본문중 “공사가 설립된 때”라 함은 공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시점이며, 이때부터 설립당시의 3개기관의 직원은 농업기반공사 직원으로 승계됨. 따라서 설립위원회가 공사의 사장에게 업무인계한 시점과는 별개임.
- 본문중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라 함은 신설공사 설립당시 3개기관에 재직직원은 농업기반공사의 직원으로서 기존의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간주규정임.

○ 농지개량조합직원의 근무배치 특례

- 제7조중 단서조항은 농업기반공사 설립시에 농지개량조합의 지역적여건과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조합직원의 신분과 보직, 근무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지개량조합직원의 근무배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임.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단서조항 신설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第6條(職員의 承繼) 公社가 設立된 때에는 그 設立당시의 農業振興公社의 職員은 公社의 職員으로 본다.

第8條(解散 및 清算의 특례) 農漁村振興公社, 農地改良組合 및 農地改良組合聯合會는 이 法에 의한 公社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解散 및 清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公社의 設立은 農漁村振興公社, 農地改良組合 및 農地改良組合聯合會의 合併으로 본다

□ 내용해설

- 본문중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라 함은 신설공사법에 의거 3개기관의 설립근거법이 폐지되고 소멸한 3개기관의 법인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이 신설공사에게 포괄양도됨으로, 민법상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산된 것으로 의제처리하는 것을 말함.

※ 종전 설립근거법상의 3개기관의 해산·청산 관계

- 농진공·농조연 :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규정 준용
- 농조 : 농지개량조합상의 총회의결을 거쳐 장관승인 후 해산·청산

- 후단중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합병으로 본다”라 함은 3개기관이 신설공사법에 의거 소멸되고 신설공사로 통합됨에 따라 이로 인한 조세부담을 면제받기 위한 법적근거로서 세법상용어인 합병으로 볼 수 있다는 의제규정을 둔 것임.

※ 통합관련 조세부담대상 : 법인세, 법인세 특별부가세(피합병 법인의 청산소득, 시설법인의 합병차익), 취득세, 등록세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와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7조제4항>

第7條(설립위원회의 설립) ④농업진흥공사는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第9條(權利·義務의 承繼) ①公社は 農漁村振興公社, 農地改良組合 및 農地改良組合聯合會의 財産과 債權·債務 기타 權利·義務를 포괄적으로 承繼한다.

②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農漁村振興公社, 農地改良組合 및 農地改良組合聯合會의 名義는 公社의 名義로 본다.

③公社에 承繼된 財産의 價額은 이 法 施行日 前日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④公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改良組合과 農地改良組合聯合會로부터 承繼받은 財産은 農業基盤施設의 유지·관리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내용해설

- 포괄승계 대상 : 3개기관의 재산, 채권, 채무 기타 권리·의무등 일체
(장기채, 적립금등 포함)
- 3개기관의 자산현황 ('97 결산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농진공	농조연	농 조	계
자 산	28,811	588	33,271	62,670
부 채	27,004	427	5,655	33,086
자 본	1,807	161	27,616	29,584

- 제2항 중 “공사의 명의로 본다”라 함은 종전 3개기관의 명칭이 등기부, 기타 공부에 각각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설공사의 명칭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의제 함으로써 기성의 법률관계의 효력유지는 물론 소멸되는 기관의 명칭사용 등으로 인한 제3자의 선의의 불이익발생을 예방하기위한 법적근거 규정을 말함.
- 승계된 재산가액을 신설공사 시행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이유는

3개기관의 재산 및 채권·채무등 일체를 포괄양도하므로 실제거래 가격으로 재평가할 실익이 없으므로 시행전 최종일 현재 장부상 등재된 금액으로 함.

- 제4항중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 함은 자산과 회계계정을 따로 설치·구분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관련조항 : 법제30조(공사의 회계특례)

□ 참고자료

- '98. 10부터 시행중인 의료보험법에서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국립의료보험공단에 포괄승계시킨 사례가 있음.
- 지역의료보험조합재산 : 적립금 8,000억원, 건물, 사옥등
→ 이미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승계조치 완료
- 국민건강보험법안 부칙 제3조(권리의 포괄승계)에서 의료보험조합은 직장의료보험조합을 의미함.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3조>

第3條(권리·의무의 승계) ①공사는 농업진흥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승계될 재산은 공사의 설립전일의 장부 가격으로 한다.

<의료보험법 부칙 제3조>

제3조(권리의 포괄승계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이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산은 공단의 재산으로 본다.

第10條(農漁村振興公社, 農地改良組合 및 農地改良組合聯合會의 사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農漁村振興公社, 農地改良組合 또는 農地改良組合聯合會가 施行한 사업 또는 施行중인 사업은 公社가 施行하였거나 施行중인 사업으로 본다.

□ 내용해설

○ 사업시행과 관련 경과규정의 필요성

3개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중 사업시행자로서 이미 준공처리 완료된 사업 또는 공사완료된 사업 등을 포함하여 신설공사의 시행일 이후 까지 계속되는 사업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보호, 인·허가등 행정행위의 효력유지와 사업의 지속성 유지 및 공사마무리 등을 위한 규정임.

○ 본문 중 “시행한 사업”이라 함은 공사는 완료되고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준공검사를 마친 종료된 사업 또는 대규모사업 중 부분 공정별로 공사가 완료된 사업을 말함.

○ “시행중인 사업”이라 함은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을 물론, 공사착수는 아니나 사업인가 승인된 사업으로 예산확보가 성사된 사업을 포함한다.

第11條(組合員 및 組合區域에 관한 經過措置) ①종전의 農地改良組合法에 의한 組合員은 第13條의 農業用水利用者로 본다.

②종전의 農地改良組合法에 의한 組合區域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된 公社管理地域으로 본다.

③종전의 農地改良組合法에 의하여 農地改良組合이 組合員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公社가 農業用水利用者に 대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 내용해설

- 농지개량조합법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폐지되므로, 농지개량조합법상의 “조합원”과 “조합구역”을 각각 이 법에 의한 “농업용수이용자”와 “공사관리지역”으로 갈음하는 법규용어로 간주 규정하므로써 법률관계에 있어 이해관계인 등의 기득권의 보호는 물론 선의의 제3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임.

종 전(농지개량조합법)	개 정(농업기반공사법)
조합구역	공사관리지역
조합원	농업용수이용자

- 제3항 중 “행한 처분”이라 함은 종전 농지개량조합이 권리능력 주체로서 조합원에게 발한 일체의 법규상·행정상 작위(作爲) 및 부작위(不作爲) 의무를 포함함.

예컨데, 조합비 납부의무, 채무이행사항, 시설물 원상복구 등 행정명령

第12條(組合員의 組合債務 分擔額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의 종전의 農地改良組合法에 의한 組合員(組合員이 組合區域내의 土
地의 所有者가 아닌 경우에는 그 土地의 所有者를 말한다)의 組合債
務에 대한 分擔額은 農業用水利用者(農業用水利用자가 公社管理地域
내의 土地의 所有者가 아닌 경우에는 그 土地의 所有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公社債務(組合債務를 承繼한 것에 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分擔額으로 본다.

②農業用水利用자는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가 公社管理
地域에서 제외된 때에는 당해 土地가 公社管理地域에서 제외되기 전
의 公社債務에 대한 分擔額을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公社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額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이를 減免할 수 있다. 이 경우 減
免額은 國家가 대신 부담한다.

④公社는 公社管理地域에서 제외된 土地중 農業외의 目的으로 사용
하는 土地에 대하여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額을 減免하여서는
아니된다.

□ 내용해설

○ 제1항중 “조합원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액은 농업용수이용자의 공사
채무에 대한 분담액으로 본다”라 함은 조합원의 채무는 3기관 통합에
의해 권리·의무가 농업기반공사에 포괄승계됨으로 기존 조합원의 농
지개량조합에 대한 채무 역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채무로 같음하여
채권·채무에 대한 효력을 계속 존치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둠.

○ 제2항 중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이라 함은 신설공사가 종전 농지
개량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조합채무를 승계받은 것을 말함.

※ 조합원의 조합채무는 체납조합비와 장기채('89이전분)임.

- 공사는 분담액에 대한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타당하다고 인정 한 때에는 장관승인을 얻어 감면하고, 감면액은 국가가 대신 부담토 록 규정함으로써 농업용수이용자의 불이익을 해결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감면 및 국가대납 등의 특례조항 명시함.
- 농업용수이용자가 본래의 농업용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관 하여는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 발생하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토지의 타목적 전용시에는 특혜를 배제토록 명시함.
- 조합비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97 기준)

(단위 : ha, 백만원)

지구수	수혜면적	부과내역		징수내역		체납액
		면적	금액	징수액	미징수액	
105	499,080	482,713	29,191	29,151	40	421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지개량조합법 제47조>

第47條(脫退組合員의 責任) ①第1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區域에서 제외됨으로써 組合員의 資格이 상실된 者(組合區域에서 제외된 組合員資格者가 아닌 土地所有者를 포함한다)는 組合區域에서 제외되기 전의 組合債務에 대한 分擔額을 組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分擔額의 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組合은 農林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이를 減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減免額은 國家가 대신 부담한다.

②第18條第5項의 規正에 의하여 組合區域에서 제외된 土地를 農業외의 目的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第1項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分擔額을 減免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3條(長期債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의 法律 第5077號 農地改良組合 法에 의하여 廢止된 종전의 農地改良組合育成에關한特別措置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債에 대한 國庫補助에 관한 規定은 그 長期債의 償還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내용해설

- “그 장기채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라 함은 '88. 12. 31이전에 농지개량사업 용자 또는 차입된 장기채와 '89이후 농지개량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장기채에 대하여서는 국가보조로 상환하도록 되어있는 바, 통합으로 인하여 신설공사체제하에서도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국가보조로서 상환되어야 함을 뜻함.

※ 종전 장기채 중 양곡관리기금법에 의한 기금채무는 상환완료되어 해당되지 않음 (장기채의 법률연혁 : 참고자료)

- 장기채 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계	비율(%)	원 금	이 자
총 장기 채	9,102	100	4,121	4,981
- 정부 부담	8,143	89	3,786	4,357
- 농 민 부담	959	11	335	624
정부부담액 상환여부	8,143			
- '97까지 상환	2,852			
- 미 상 환	5,291			
정부탕감액내역	8,143		3,786	4,357
- 1차탕감('63)	180		0	180
- 2차탕감('71)	14		11	3
- 3차탕감('83)	409		202	207
- 4차탕감('86)	1,580		750	830
- 5차탕감('89)	5,960		2,823	3,137

※ 1·2차 탕감 상환 완료, 3·4·5차 탕감 상환중

○ 장기채 상환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상환 대상액	'97상환	'98계획	'99계획	2000이후
계	814,291	285,197	26,808	26,968	475,318
(원 금)	378,533	58,138	9,180	9,844	301,391
(이 자)	435,738	227,059	17,628	17,124	173,927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第3條(長期債에 대한 國庫補助) ①1988年 12月 31日 이전에 農地改良事業에 融資 또는 借入된 長期債로서 이 法 施行日 현재 金融機關에 償還(農業 振興公社에의 상환을 포함한다)하고 남은 元利金 償還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은 매년 政府一般會計에 計上하여 全額 國庫에서 補助하여야 한다.

②1989年 이후 組合이 施行하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事業을 위하여 발생하는 長期債는 全額 國庫에서 지원한다.

1. 農業用水開發·地下담 및 管井事業
2. 水利施設 改補修事業
3. 排水改善事業
4. 國家管理 防潮堤 改補修事業

③第1項의 規正에 의한 國庫補助는 農地改良事業施行地區를 單位로 행한다.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農村近代化促進法 및 農地改良組合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종전의 農地改良組合育成에관한 特別措置法 第3條의 規正에 의한 長期債에 대한 國庫補助에 관한 規正은 그 長期債의 償還이 完了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第14條(政府의 出資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政府가 農漁村振興公社에 出資한 財産은 公社에 出資한 것으로 본다.

②公社가 附則 第9條第1項에 規定에 의하여 農地改良組合 및 農地改良組合聯合會로부터 承繼받은 財産의 帳簿價額에서 그 負債를 差減하고 남은 금액은 國家가 이를 公社에 出資한 것으로 본다.

□ 내용해설

- 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라 함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정부가 이미 농어촌진흥공사에 출자한 납입자본금('98현재 1,435 억원)을 농업기반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임.
- 제2항은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전체를 출자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기준한 결과에서 재산중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또는 이에 상응한 부동산 등 현물을 국가가 출자한 것으로 간주함.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11조>

第11條(政府의 出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농촌근대화촉진법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가 農業振興公社에 출자한 財産은 公社에 出資한 것으로 본다.

第15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農地改良組合法의 規定에 의한다.

□ 내용해설

○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 필요성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태료 등의 행정형벌의 특수성 내지는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경과규정을 둠.

○ 벌칙규정과 형법·형사소송법과의 관계

- 형법에 의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刑)이 구법보다 가벼울 때에는 신법에 의하고,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刑)의 집행 면제 (형법 제1조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에 의거 범죄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법령의 개폐로 형(刑)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면소(免訴)판결 (형소법 제326조제4호)

第16條(農地管理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의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한 農地管理基金은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管理基金으로 본다.

□ 내용해설

- 농지관리기금은 신설공사법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관리기금설치 근거 규정이 폐지되므로 법적 안정을 위하여 경과규정을 둠.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10조>

第10條(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管理基金의 1990年度 運用計劃은 이 法 施行전에 國會에 제출된 “1990年度 農地管理基金運用計劃”으로 갈음한다.

第1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整備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중 “農漁村振興公社, 農地改良組合”을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15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者가 國家인 경우에는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賣却代金を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管理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第16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2項중 “農地改良組合”을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①農林部長官은 國家 또는 農業基盤公社가 施行한 農業基盤整備事業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農業基盤施設을 農業基盤公社로 하여금 引受·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管井 등 地下水 利用施設에 대하여는 地方自治團體로 하여금 引受·관리하게 할 수 있다.

第16條第3項을 削除하고, 同條第4項중 “農地改良組合”을 “農業基盤公社”로 하며, 同條第5項중 “農漁村振興公社” 및 “農地改良組合”을 각각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43條第7項중 “農地改良組合”을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49條중 “農地改良組合”을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50條第6項중 “農漁村振興公社 또는 農地改良組合”을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56條第1項중 “市長·郡守, 農漁村振興公社 또는 農地改良組合은”을 “市長·郡守 또는 農業基盤公社는”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市長·郡守, 農漁村振興公社 또는 農地改良組合이”를 “市長·郡守 또는 農業基盤公社가”로 한다.

第60條第1項 및 第3項중 “市長·郡守, 農漁村振興公社 또는 農地改良組合은”을 각각 “市長·郡守 또는 農業基盤公社는”으로 한다.

第67條第1項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78條第1項중 “農漁村振興公社는”을 “農業基盤公社는”으로 한다.

第81條第1項 및 第4項중 “農漁村振興公社”를 각각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85條第2項중 “農漁村振興公社는”을 “農業基盤公社는”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13條의”를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18條의”로 한다.

第90條第1項중 “農漁村振興公社등”을 “農業基盤公社등”으로 한다.

第97條第1項중 “農漁村振興公社등”을 “農業基盤公社등”으로 한다.

②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6條第2項第8號중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으로 하고, 同項第9號가目中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農漁村振興公社가”를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農業基盤公社가”로 하며, 同項同號다目を 削除한다.

第11條第2項중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한 農漁村振興公社에게”를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한 農業基盤公社에게”로 하고, 同條第3項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하며, 同條第4項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農漁村振興公社 및農地管理基金法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으로 한다.

第12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2項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2. 農業基盤公社

第14條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47條第2項第3號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53條第2項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③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3條2項중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을 “農業基盤公社 및農地管理基金法”으로 한다.

第264條第2項중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設立된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266條第2項중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設立된 農漁村振興公社가 同法 第13條·第16條·第21條 및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基盤公社가 同法 第18條·第20條·第24條 및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로 한다.

④ 農業機械化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4號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5號를 削除한다.

4.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한 農業基盤公社

⑤ 地方自治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1項第6號 및 第88條第1項第5號중 “畜産業協同組合·農地改良組合”을 각각 “畜産業協同組合”으로 한다.

⑥ 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중 第1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 내용해설

- 신설공사법의 제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인용조문 또는 자구등 경미한 사항의 개정만을 규정하고, 소관부처 법률외의 조세법률 등 다른 법률은 개별법에서 개정추진하기로 함.
- 본 조문의 입법기술상 속성
 - 관련법률을 동시에 정비할 수 있어 입법상의 효율성이 높음.
 - 법률 개정시차에 따른 시행상의 통일이 가능함.
 - 반면에 일반국민이 개정내용을 잘 알수없고, 자칫하면 다른 법률의 소관부처의 관할 범위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12조>

第12條(豫算에 관한 經過措置) 1990年度 政府歲出豫算에 計上된 農業振興公社 出資金은 公社 出資金으로 보며, 農漁村地域開發基金에 대한 財政投融資特別會計 出捐金중 1,000億원은 農地管理基金에 대한 出捐金으로 본다.

第18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및 農地改良組合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農漁村振興公社, 農地改良組合 및 農地改良組合聯合會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法에 의한 公社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내용해설

○ 조문의 필요성

- 3개기관이 신설공사법에 의거 해체·통합되고, 종전 설립근거법이 폐지됨.
- 농림부 소관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3개기관 명칭이나 설립근거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농업기반공사법에서 이를 모두 열거하여 명시할 수 없으므로 일괄하여 관련법률이 농업기반공사법상의 명칭과 근거법을 인용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조문의 한계

- 타 부처소관 법률, 특히 조세관련법률의 경우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기다려야 함.

□ 현행 관련법 조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10조>

第10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農村近代化促進法 또는 農地改良組合育成에 관한特別措置法의 規正을 引用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正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正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正을 각각 引用한 것으로 본다.

IV. 參 考 資 料

參 考 資 料

1. 국회심사경위	133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연대별 변천과 성과	139
3. 3개기관 연혁	142
4. 그 동안의 3개기관 조직개편 논의경과	143
5. 3개기관 기능중복현황	144
6. 수리조직운영의 외국사례	147
7. 농지개량조합 일반현황	148
8. 장기채의 법률연혁	149
9. 법령해석요령	152

IV. 參考資料

1. 國會議事經緯

가. 議事經緯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1월 27일 정부제출

▷ 회부일자 : 1998년 11월 30일

▷ 상정일자 :

● 제19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1998년 12월 4일)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1998년12월8일) 상정 · 심의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1998년12월14일) 심의

● 제1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1998년12월22일) 심의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1998년12월24일) 심의 · 의결(수정)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1998년12월29일)

소위원회심사보고, 의결(원안)

나. 專門委員 檢토포고 要지(수석전문위원)

(1) 農墾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立법경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정안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기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등 비효율이 많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가 미흡하였기 때문

에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근간으로 이 법을 통합·제정하여 3기관을 통합,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고 조직을 효율화하여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법률로서, 4장3절51조(부칙 18개조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의 설립, 농업용수관리에 필요한 공사관리지역 설정, 농업용수이용자, 농지의 매매·임대차사업, 농지관리기금의 운영 및 관리,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해산 및 재산 등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2) 3기관의 주요현황

구 분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조연합회
법 인 성 격	-정부투자기관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비영리공법인 (농지개량조합법)	-비영리공법인 (농지개량조합법)
주 요 기 능	-농업생산기반조성· 정비, 영농규모확대, 생활환경 개선	-농업생산기반정비,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농조의 공동이익증진, 국가 및 농조등이 위 탁한 사업
운영비 조달	-정부출자금, 사업 수익	-국고보조금, 조합비 기타	-사업수익
연간사업규모 (’97결산)	- 7,947억원	- 1조 5,546억원	- 635억원
조직 및 정원	-정원 2,478명 -본사 : 5본부 1원19부서 -지방 : 9지사7사업 단83지부	-정원 4,024명 -조합수 : 105개	-정원 : 672명 · 본회 : 2이사10부서 · 지방 : 8지회 1출장소

(3) 3기관 통합의 배경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조성·정비·관리와 관련한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음.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기술용역(기본조사, 설계감리) 업무는 일정규모이상 사업에 대해서 농진공, 농조연에 배분시행하고 있고, 사업시행과 수리시설유지관리업무는 규모별로 배분하여 농조와 농진공이 분담하고 있음.

- 수리관리체계의 분산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수질관리 체계가 부실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수리시설 설치사업은 농진공이, 유지관리는 농조가 분담함으로써 시공자와 관리자가 이원화 되어 있어 대규모 농업기반시설 이관시 하자보수 및 책임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로 농진공과 농조간의 분쟁가능성이 있으며, 대규모 농업기반시설 완공 시 기존의 조합구역과 조화되지 못하여 물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음.
 - 그 동안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개발에만 치중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종합적인 수질관리개선 노력은 미흡한 편임.

- 지방단위에 유사한 농업관련기관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음.
 - 농업관련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농업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임에 비해,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는 너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실례로, 도단위에는 농진공지사(9)와 농조연지회(8)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시·군단위에는 농진공지부(83)와 농조(105)가 별도로 설치·조직되어 있음.

- 방만한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조개량조합등의 기능을 대폭 정비하여 IMF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운영대책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임.

- 소규모 농조(수혜면적 3,000헥타 미만)의 통폐합 등 운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96년 7월 시행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40여개의 설립기준 미달조합에 대해서 '97년 6월까지 자율적인 통폐합 시한을 부여하였으나, '98년 10월까지 농조건 통폐합 실적은 1개소(강원도 양구+춘천)에 불과함.
 - 전국 105개 농조중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조합이 95개(90.5%)이며, 이중 운영경비부족으로 예산편성조차 어려운 조합이 20개에 이르고, 퇴직급여적립금 1억원 미만 조합이 79개에 이르고 있어 저수지, 양·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의 수리등 유지·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전체 농조운영경비의 55%를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95년 1,020억원, '96년 1,065억원, '97년 1,090억원, '98년 917억원등 매년 1,000억원 수준), 조합비는 15% 기타 고정자산 매각과 차입금 등으로 30%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3기관을 통폐합할 경우 조직개편과 인원감축, 경영개선 등을 통한 경비절감 예상액은 연간 약 600억원 내지 7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 금액으로 농민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측 입장임.

다. 사업에 관한 사항

- 안 제24조는 현행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의 규정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옮겨 규정한 사항인데, 농지재개발사업등에 대해서는 안 제10조(사업)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았음.
- 또한 안 제24조 제1항중 농지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시행방법을 하위법령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라. 조합비 문제

제정법안은 농업용수이용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통합공사설립에 따른 농업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현행 조합비 이하의 수준으로 상한선을 명시하고, 그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을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마. 설립위원회 구성

안 부칙제3조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설립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히 반영되도록 현재 10인으로 되어 있는 설립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인 내지 20인으로 늘리고 3기관 대표가 설립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토록 명시하는 등 설립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음.

바. 임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 법무법인에서 “일부 위헌소지가 있다는 견해와 위헌에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로 상이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직위를 상실하는 조합장 등 임원에 대해 적절한 처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사. 시 행 일

안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 법안이 금년내에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신설공사의 설립시점을 명확히 하고 3개기관 및 신설공사의 회계연도와 결산정리의 편의를 위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아. 기 타 (청원제출)

1998년 11월 18일 허남훈·김영일의원의 28인의 소개로 전북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643-2 전종철외 15,967인으로부터 “농업기반공사설립반대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농림해양수산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요지

(위원장 김기춘 위원)

- 안 부칙 제3조 제2항의 공사설립위원회의 원안중 “설립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된다” 를 “설립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대표, 농업인·농업인 단체대표와 학계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된다.”라고 수정
- 안 부칙 제9조 제4항에 “공사가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종전의 농조조합원인 농민이 가졌던 재산권으로서의 시설이용 및 수익권은 계속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부칙 제6조의 후단에 “농지개량조합장등 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와 업무수행능력등을 감안하여 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직무의 부여등 필요한 예우를 한다”라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임기가 단축되는 임원들에 대해 적절한 예우를 취하도록 조치하였음.
- 안 부칙 제7조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배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추가하여 보직 및 근무지 배치시 농조 직원의 지역적 연고를 존중하도록 조치하였음.

- 안 부칙 제3조 제4항을 신설하여 “공사의 분사무소에 지역농업인의 대표로 구성하는 운영대의원회를 구성하고, 주사무소에는 운영위원회 대표로 구성하는 자문기구를 둔다”라는 규정을 두어 신설공사에서 농업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에 명문화하였음.
- 신설공사의 설립일을 명확히 법정화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내용

(약간의 체계자구 수정이 있었음 : 내용생략)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연대별 변천과 성과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변천

▶ 1940년대

- 미군정하에 조선농지개발영단 및 조선수리조합연합회의 기능 부활
- 미군정 및 ECA 원조에 의한 수리사업용 원자재 조달로 사업기반 정착

▶ 1950년대

- 6.25사변과 수리시설 복구
- 농지개혁과 외국원조에 의한 수리시설의 확충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및 귀속농지관리특별회계에 의한 수리자금 확보)

▶ 1960년대

- 국토건설사업과 식량증산
- 농지개량사업 관계법령의 정비

(수리조합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 토지개량사업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제정)

▷ 1970년대

-농촌근대화를 지향한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체제 전환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1970. 1)
- 농업진흥공사 설립(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를 통합)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의 집중적인 시행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정(1975. 4)
- 농업진흥공사 농지확대개발기술단 병설

-배수개선사업의 채택(1975)

▷ 1980년대

-수리시설 내한능력 일제조사를 통한 농업용수개발 10개년계획 수립 (1981. 9)

-농지기금조성 및 대체농지개발제도 도입(1981. 3)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

▷ 1990년대

-농어촌개발대책의 제도화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1990. 4)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정(1990. 4)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개정
- 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

□ 농업생산기반사업 실적

(단위 : ha)

연도	경지정리			배수개선	개간	간척
	총답면적	개발면적 (누계)	경지정리 율 (%)	개발면적 (누계)	개발면적 (누계)	개발면적 (누계)
1990	1,345,280	577,177	42.9	52,905	195,800	53,480
1991	1,335,204	599,554	44.9	57,106	196,094	53,573
1992	1,314,727	623,274	47.4	59,839	196,347	55,228
1993	1,298,323	643,657	49.5	62,979	196,571	59,902
1994	1,267,112	662,282	52.2	67,134	196,883	62,070
1995	1,205,867	689,689	57.2	68,905	197,113	73,699
1996	1,176,148	713,620	60.7	71,857	197,172	73,980
1997	1,162,852	658,380	56.6	81,052	197,333	74,691

□ 농업용수개발사업 실적

(단위 : 개, ha)

구분	합계		저수지		양(배)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	
	개소수	수혜 면적	개소수	수혜 면적	개소수	수혜 면적	개소수	수혜 면적	개소수	수혜 면적	개소수	수혜 면적
총계	62,281	856,027	18,034	506,243.5	6,141	146,234.5	18,252	102,533.9	3,853	20,041.0	16,001	30,549.8
시군	51,048	310,634.3	14,874	142,996.9	3,020	30,693.8	14,631	89,588.4	3,325	16,834.4	15,198	30,520.8
농조	11,233	494,968.4	3,160	363,246.6	3,121	115,540.7	3,621	12,945.5	528	3,206.6	803	29.0

3. 3개기관 연혁

연도별	지 역 조 합	중 앙 단 위	
1908	수리조합 창설(4개)		
1938	수리조합(189개)	조선토지개량협회(설립)	
1940	수리조합(300개)	조선수리조합연합회(개칭)	
1949		대한수리조합연합회(개칭)	
1961	토지개량조합 (695→198개로 통합)		
1962		토지개량조합연합회(개칭)	
1968		지하수개발공사(설립)	
1970	농지개량조합(개칭)	농업진흥공사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공사 통합)	
1971		사단법인 농지개량협회 (설립)	
1973	농지개량조합 통합 (268→127개)		
1978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설립)	
1981	농지개량조합통합 (123→103개)		
1990			농어촌진흥공사 (개칭)
1998~ 현재	농지개량조합(105개)	농지개량조합연합회 (8개도지회)	농어촌진흥공사 (9개지사, 83지부)

4. 그 동안의 3개기관 조직개편방안 논의 경과

- '88년 평민당이 주축이 되어 농조의 시·군 이관 주장
 - 그러나 행정구역별로 농업용수를 관리할 경우 수리권 분쟁이 우려되고, 시·군에 별도기구가 필요하여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 조합비 인하, 장기채 국고지원, 조합장 직선제 도입으로 결론

- '93년 “신경제(농정)5개년 계획” 추진과정에서 3개기관 통합거론
 -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소규모 농조 합병 추진 등으로 결정
 - ※ 농조 노조는 국가예산절약, 농업인 편익증진 차원에서 통합 찬성

- '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기술 용역사업 통합 등 거론
 - 농진공과 농조연의 중복기능은 점진적 통합이나 경쟁을 통해 해결
 - 농조는 최소한 자립할 수 있는 규모로 합병을 유도하는 것으로 결정

- '94년 민자당 “UR대책소위”에서 농조의 지방공기업화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판단, 논의 중단

- '95년 농림부에서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편 추진
 - ①농조의 도단위 대규모 조합화, ② 3개기관 통합후 국영기업화
③농조를 지방공사 또는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3개 방안 마련
 - 기존 농조규모를 키워 운영을 개선토록 결론

-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조연합회의 기능통합이 과제로 선정
 -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조연합회와 기능을 통합, 농업구조조정지원 및 농어촌 생산기반 기술지원 전문기관으로 축소개편

5. 3개기관 기능중복현황

가. 사업시행체계

구 분	사업주관	사업시행자	기본조사	세부설계	공사감리
농업용수개발	시 장 도지사	시 장 군 수 농 조	농진공	농진공 민 간	농진공 민 간
경 지 정 리	시 장 도지사	시 장 군 수 농 조	농진공 농조연 시·도지사	농진공 농조연 민 간	농진공 농조연 민 간
배 수 개 선	시 장 도지사	시 장 군 수 농 조	농진공 농조연	농진공 농조연 민 간	농진공 농조연 민 간
수 리 시 설 개 보 수	시 장 도지사	농 조	전문기관	농진공 농조연 민 간	농진공 농조연 민 간
간 척	시 장 도지사	시 장 군 수 농진공 농 조	농진공	농진공 민 간	농진공 민 간
지 표 수 보강개발	시 장 도지사	시 장 군 수 농 조	농진공 농조연 민 간	농진공 민 간	농진공 민 간

나. 조직체계

구분	농진공		농조연	농조
본사	고유기능	-시험, 연구, 조사 -대단위농업개발 -해외농업개발	-회원조합 지도 -자립육성금고 운용	
	중복기능	-농업생산기반정비, 조사·설계 및 기술지원	-농업생산기반정비 기술지원	
도단위	고유기능	-정주권개발, 생활환경정비, 소득원개발, 지하수개발 등	-환지업무	
	중복기능	-농업용수,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등 조사·설계 및 기술지원	-농업용수,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등조사·설계·감리	
시·군단위	고유기능	-영농규모적정화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중복기능	-농업용수,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감리 등		-구역내농업용수,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사업시행 -방조제 유지관리

다. 기관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

< 농진공 >

(단위 : 명)

구 분	계	임원	집행간부	1급	2급	3급	4급	5급	기능직
정 원	2,478	2	7	66	243	678	1,132	183	167
현 원	2,224	2	6	48	192	561	1,036	262	117
증 감	254	-	-	118	51	117	96	△79	50

※ 조건부직원 76명 제외

< 농조 >

(단위 : 명)

구 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직
정 원	4,024	105	3	41	155	600	870	1,041	1,236
현 원	3,935	103	4	37	162	579	1,360	453	1,237
증 감	89	2	△1	4	△7	21	△490	561	△1

※ '97. 12.인사규정준칙 개정으로 1급을 분리 1,2급을 구분, 6계급체제로 개편

※ 특별회계직원 281명 제외

< 농조연 >

(단위 : 명)

구 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5급		기능직
정 원	672	5	18	51	144	422		32
현 원	657	5	18	52	135	275	129	43
증 감	15	-	-	△1	9	18		△11

6. 수리조직운영의 외국사례

□ 수리조직의 운영체계

구 분	한 국	일 본	대 만	네덜란드
명 칭	농지개량조합	토지개량구	농전수리회	Waterschap (Waterboard)
조합장선출	선 출 직 (보 수 직)	임명 및 겸직 (무보수)	임 명 제 (자격요건제한)	임 명 직 (자치단체장)
임 원	선 출 직 (대의원회 선거)	임명 및 겸직	임 명 제	선 출 직
운 영 비	조 합 비 + 국고보조	조합비 중심	'92년이후 전액국고보조	수익자부담 (오염세 포함)
농업인부담	일 부	대 부 분	無	일 부 (비농업인도부담)
중 앙 조 직	농지개량조합 연 합 회	전국토지개량 사업단체연합회	농전수리회 연 합 회	Union of Waterboards
지도·감독	시·도, 농림부	도·도·부·현	성 정 부	도, 농림부
조직 성격	조합(사단법인)	조합(사단법인)	조 합	특수자치체

□ 농업인의 수리비 부담과 국가 보조

- 대만 : 농업인부담 회비의 100%를 국고에서 지원(1992년 이후)
 - 1995년의 경우 국고지원액이 1,200억원 수준
- 일본 : 조합비·장기채에 대해서는 수익자(농업인) 부담
 - 농업인부과금이 전혀 없는 지구는 7%에 불과하고, 보조금(중앙정부, 현, 시·정·촌)이 전체 수입의 약 20% 수준에 불과
- 네덜란드 : 철저한 수익자 부담(회비납부방식이 아니라 세금징수방식)
 - 단, 비농업인인 건물소유자, 토지소유자 등도 오염세를 부담하여 농업인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음.

7. 농지개량조합 일반현황

□ 총 괄 ('97. 12월말 기준)

농조수	구역면적	수혜면적	임직원	조합원수	대의원수	홍농계수
개	천ha	천ha	명	명	명	개
105	580	499	3,728	950,000	6,527	17,128

□ 규모별 조합수 ('97. 12월말 기준)

계	1,000ha 미만	1,000 ~ 3,000	3,000 ~ 5,000	5,000 ~ 10,000	10,000 ~ 20,000	20,000ha 이 상
105개	9	36	32	19	6	3

※ 3,000ha 미만 : 51개 조합

□ 조합비 및 국고보조 지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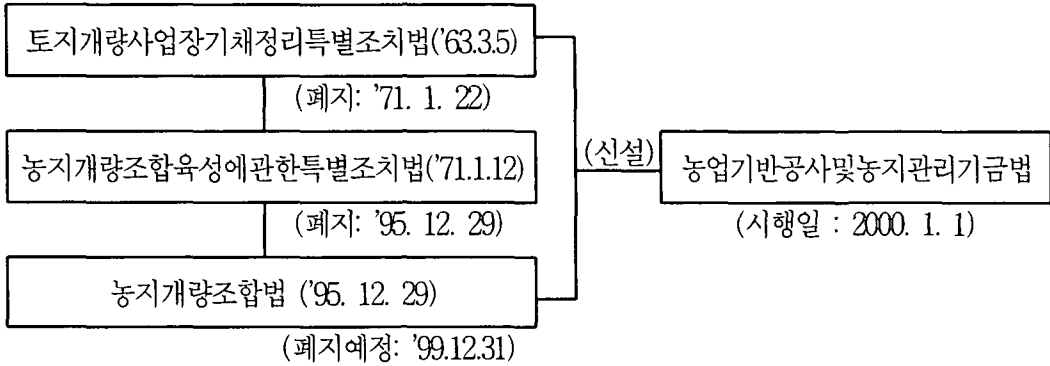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A)	국고보조금(B)	조합비	수익사업수입	적립금등기타	B/A
'89	110,832	66,773	19,725	7,436	16,898	60%
'90	134,425	71,262	21,888	7,428	33,847	53
'91	155,576	78,413	23,630	6,102	47,431	50
'92	154,425	85,058	24,978	6,992	37,467	55
'93	156,354	85,239	26,061	5,723	39,331	55
'94	183,793	94,668	26,421	7,017	55,683	52
'95	185,722	102,056	26,881	8,820	47,956	55
'96	194,355	106,491	27,844	7,175	52,825	55
'97	194,623	109,033	30,715	5,298	49,577	56
'98	192,901	91,682	31,461	8,294	61,464	48

※ 적립금 등 기타에는 차입금이 포함됨

8. 장기채의 법률연혁

가. 법률 변동 내역



나. 토지개량사업장기채정리특별조치법

구 분	내 용
▷ 법률제정 (1963. 3. 5 법률 제1291호)	○ 제정목적 토지개량사업에 용자된 장기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오용(誤用)된 정부보조금을 조속히 회수함으로써 농민부담의 적정도모 ○ 주요내용 -1946. 1. 1부터 1961. 12. 31까지 토지개량조합등에 대하여 토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용자된 자금을 정리대상으로 함. -상환기간을 공사후 30년의 기간안에서 연장할 수 있게하고 농민이 부담하던 장기채를 국가가 보조한 것으로 보아 그 상환을 면제함. -장기채정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 및 각도에 장기채 정리 위원회 설치토록 함.
▷ 1차개정 (1963. 9. 24 법률 제1407호)	○ 개정이유 조합이 시행한 토지개량사업공사가 각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정 또는 부당하게 시공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합이 부담하게 된 장기채는 정부에서 이를 보조한 것으로 함.

구 분	내 용
▶2차개정 (1963. 12. 16 법률 제1587호)	○개정이유 개정헌법상의 권력구조에 부응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사항 정비
▶3차개정 (1966. 9. 26 법률 제1835호)	○개정이유 장기채의 상환기간을 30년으로 하고, 1965. 12. 31 현재의 미상환 원리금 총액을 미경과연수에 대하여 균등 상환토 록함.
▷폐 지 (1971. 1. 22)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299호, 1971. 1. 22)부칙 제2항에 의해 폐지됨.

다.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구 분	내 용
▷법률제정 (1971. 1. 22 법률 제2299호)	○제정목적 조합비의 불균형 내지 불합리한 부과를 시정하고 부당한 과중부 담을 조속히 해소시켜 줌으로써 조합운영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하고 조합원의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소득향상에 이바지함. ○주요내용 -정리될 장기채범위는 정리대상자가 시행한 농지개량사업 지구 중 1970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었거나, 9할이상의 공정에 달 한지구로서 1970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채. -장관은 유지비의 확보가 곤란하고 영속적으로 세입결함이 생긴 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서는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장기채정리는 정리대상자 신청에 의해 농림부장관이 사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
▶1차개정 (1982. 12. 31 법률 제3649호)	○개정이유 1971년 1월1일 이후 신규사업지구 발생과 여건변동 등을 감 안하여 장기채의 감면을 합리적으로 조정

구 분	내 용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채 감면대상 : 1981. 12. 31 현재 농지개량사업이 완료되었거나 9할이상 공정에 달한 경우 -감면금액 : 1,000m²당(약300평) 장기채 연간원리금 상환액이 1981년도 2등급 벼 20kg의 정부미 수매가격 초과금액 <p>※'81. 12. 31 현재 9할이상 공정에 달하지 못했거나 사업착수 예정인 농지개량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상기 감면금액을 연차적으로 순연토록 함.</p>
<p>▶2차개정 (1985. 12. 31 법률 제3805호)</p>	<p>○개정이유</p> <p>농업용수사업중 저수지의 경우 장기채에 의한 농민부담이 30%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인하조정하여 조합비의 과중 부담 경감</p>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1차 개정시 장기채 감면대상자와 같음. -감면금액 : '81. 12. 31까지 1,000m²당(약 300평) 20kg (9,400원) → '85. 12. 31까지 1,000m²당(약 300평) 15kg (8,181원) <p>※순연기준점도 '81. 12. 31에서 '85. 12. 31로 감면기간 순연</p>
<p>▶3차개정 (1987. 12. 4 법률 제3982호)</p>	<p>○개정이유</p> <p>자금관리특별회계법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률의 제명(題名)인용사항 정비.</p>
<p>▶4차개정 (1989. 4. 1 법률 제4114호)</p>	<p>○개정이유</p> <p>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융자된 장기채와 일반조합비에 대한 농민부담이 과중하므로 장기채는 전액감면하여 국고보조하고, 일반조합비도 '87기준 1,000m²당 28.7kg(18,903원)에서 5kg/1,000m²(약 300평)로 대폭경감</p>

구 분	내 용
	<p>○주요내용</p> <p>-1988. 12. 31 이전 농지개량사업에 용자 및 차입된 장기채 중 남은 원리금 전액 국고 보조</p> <p>-1989이후 조합이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사업, 관정사업, 지하댐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배수개선 및 구각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위하여 발생하는 장기채는 전액 국고보조.</p> <p>-조합비는 농지면적 1,000㎡당 벼 2등급 5kg의 당해연도 정부수매가격에 해당금액이하로 하고, 초과금액은 국고보조.</p>
▷폐 지 (1995. 12. 29)	○농지개량조합법(법률제5077호, 1995. 12. 29)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폐지됨.

9. 법령해석 요령

가. 법령해석의 유의점

- “법령”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법 또는 법률과 하위법인 시행령·시행규칙을 총칭하며, “법”과 “법률”이라는 용어는 구별없이 혼용되고 있음.
- 법령해석은 해당법령의 제정취지 및 법정신과 그 성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다시 말하면, 법령의 본래 제정목적은 달성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는 법령의 올바른 해석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임.
-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법조문 자체의 단편적인 아전인수격으로 자구해석을 한다든지, 유추해석, 확대해석 또는 반대해석을 남용하므로써 본래 제정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해석상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음.

나. 올바른 법령해석 요령

첫째, 법령이 담고 있는 법정신과 제정목적을 이해하여야 함. 예컨대, 그 법이 규제법인지, 조직법인지, 사업법인지, 절차법인지, 어떠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등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여야 함.

둘째, 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령체계 및 구성 등의 내용을 파악해야 함. 일반적으로 법령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법률체계와 내용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과의 조화를 고려함은 물론 전체의 흐름과 특징을 알아야 하는 것임.

셋째, 선입견과 상식을 전제로 한 자의적인 해석은 금물임. 최근의 법령은 법규적인 체제로 되어 있으므로 각 개별법에서 정의하는 개념과 용어의 선택이 명시되어 있음.

다. 법령해석의 종류

법률해석(유권해석) :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
학리해석 : 문리해석, 논리해석

- 유권해석의 주체는 국가기관으로서 구속력을 지니므로 공권력해석이라고 함. 해석의 주체가 되는 국가기관별로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질의회신의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행정해석이라고 통칭함.
- 학리해석은 학자의 학설 등에 기인한 법해석을 의미하는데, 보통 실무에 접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음. 학리해석에는 법령조문 그 자체에 주안을 두고 해석하는 문리해석과 법령조문외에 관계법령간의 관계, 제정목적 및 입법정신, 적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논리해석으로 구분됨. 논리해석은 문리해석과는 달리 자유로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색임.

※ 논리해석기법

- 확대해석 - 확장해석이라고 하며, 법령규정의 문자를 보통의미보다 넓게 해석 (적극적 해석)
- 축소해석 - 확장해석과 반대 (소극적 해석)
- 변경해석 - 법령의 규정의 의미를 변경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
- 반대해석 - 법령에는 직접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 규정 이면의 뜻을 독해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해석하는 방법

예) 민법중『미성년자가 혼인을 함에 있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반대해석에 의하여 성년의子在 혼인을 하는데는 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

- 유추해석 - 서로 비슷한 2개의 사항 가운데 한쪽에 대하여서만 규정이 있고 다른 한쪽에 대하여는 직접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그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다른 쪽에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해석

라. 법령 상호간의 경합 또는 상충시 해석원칙

(1) 적용범위 및 형식적 효력의 원칙 (제1원칙)

법령 상호간의 적용대상범위와 법형식에 따라 발생하는 효력 상하관계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원리

예컨데, 농어촌정비법 제정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분산된 마을정비사업은 이미 한시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오지개발촉진법('99년까지), 도서개발촉진법('97까지)에 의해 개별법이 갖는 취지와 목표에 따라 오지면과 도서면의 기반정비사업을 고려함으로써 상호 충돌 모순을 해소함.

(2) 신법우선의 원칙 (제2원칙)

법령 상호간의 제1원칙에 의한 동등한 형식적 효력이 상충되는 경우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임.

적용기산점에 관하여는 국회의결일, 공포일, 시행일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회의결일로 보는 경향임.

(3) 특별법우선의 원칙(제3원칙)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으로서 제2원칙의 예외다. 즉, 제정일시(때) 전후에 불구하고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일반법은 그에 대하여 보충적 2차적으로만 적용되는 원리다.

여기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법률제명에 의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제한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나, 특정의 사람·사물 또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이나에 구별의 실익이 있다. 따라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상대적이다.

예) 민법과 상법

마. 법령 유사용어와 그 사용예

○ 『또는』, 『및』, 『과』

○ 『또는』은 2개이상의 사항중에서 선택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선택적 접속사)

예)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또는 준조시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지역

○ 『및』, 『과』는 2개이상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병합적 접속사)

예) 농경지등 토지 및 연안해면을 포함하는 지역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 『以上』, 『以下』, 『超過』와 『未滿』

○ 『이상』과 『이하』는 기준치 그 자체를 포함하며 그보다 많던가, 적던가를 표시

예)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00만원도 포함)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60점도 포함)

○『초과』와『미만』은 기준치를 포함하지 않음.

예) 수폐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한다.(100분의 11부터 포함)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500제곱미터미만으로 한다.
(1,499제곱미터까지)

㉠『以前』과『以後』, 『前』과『後』

○『이전』과『이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는 것이고

○『전』과『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 4월1일이후 15일간 → 4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4월1일후 15일간 → 4월2일부터 4월15일까지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공포일이 '94.
12. 22일 경우 시행일은 '95.6.23일)

㉠『適用』과『準用』

○『적용한다』라고 함은 적용되는 조항이 조금도 수정없이 절차와 방법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로서 법적효력은 같다.

예) 토지분할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준용한다』라고 함은 업무내용 및 성질에 따라 기본적인 골격을 유
지하되, 다소 수정되어 적용하는 경우임.

예) 농지에 관한 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대한 교환·분
합에 있어서는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다』,『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한다』또는『하여야 한다』는 주로 강제조항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량
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할 의무를 지우는 것.

의무 불이행시 처벌 또는 부담행위가 수반된다.

예) 인가·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그 사길을 신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조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 것임.

예) 기준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퇴거를 명할 수 있고, 명하지 않을 수도 있음)

㉠ 『協議』, 『同議』, 『合議』

- 『협의』는 대등자간의 경우에 쓰이며, 협의이행여부에 대한 구속력은 약함.
- 『합의』는 이해관계자간의 완전한 의견일치가 수반되는 경우며 효력요건의 구성요인이 된다.
- 『동의』는 대등자간의 경우에도, 하위자로부터 상위자의 경우에도 쓰여짐.

㉡ 『期日』, 『期限』, 『期間』

- 『기일』이란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한 날에 매여있는 경우에 쓰임.
- 『기한』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던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일시의 도달에 매이게 하는 경우에 쓰임.
-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적인 간격의 길이를 표시하는 용어임.

㉢ 『다음 각號에 該當하는 경우』, 『다음 각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 쓰임(필충조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성요소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성립요건이 되는 경우에 쓰임(충분조건)

㉣ 法令의 題名·題號는 붙여 쓴다.

- 예)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句讀點(,) , 中間點(·)

- 하나의 어구가 띄어 쓰여져 있을 때에는 구두점(,)을 사용하고

- 띄어 쓴 것이 없을 때 또는 동일연장선상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중간점(·)을 사용한다.

예) - 기타 부득이한 경우,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수산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 『내』와 『안』

- 시간을 표시할 때에는 『내』로 하고
- 지역이나 범위를 표시할 때에는 『안』으로 한다.

예) …… 기간내, …… 범위안에서

㉡ 『即時』와 『지체없이』

- 『즉시』는 시간적인 한시성이 보다 강한 것에 사용하고(이유불문)
- 『지체없이』는 역시 시간적인 한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지체는 허용됨.

㉢ 『境遇』와 『때』

- 『경우』는 가정적인 조건을 가르키는 용어이고
- 『때』는 시점 또는 시간이 문제로 된 경우에 사용한다.

㉣ 『~로 본다』

- 간주조항으로서 타법률 또는 규정에서의 적용기준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
- 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박농어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민박농어가로 본다.

㉤ 『다만』, 『이 경우에』

- 접속사는 아니지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법률용어로 쓰임.

○『다만』은 단서조항이라고도 하는데 주된 문장뒤(본문말미)에 본문내용의 제외 또는 예외적인 의미로서 부가적인 조건이라든지, 해석상의 주의규정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

예) 다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본문내용의 취지를 보충적으로 설명하거나 본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항을 계속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

예) ……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환지계획에서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같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주로 단서규정에 쓰이는 술어로서 본문규정의 제외예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함. 즉,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문내용에 한정된 소극적인 부정의미를 가짐.

예) ……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같다』는 단서에 준한 형태의 술어로서 본문내용에 관한 보충적인 사항 또는 부가적인 사항을 표기함에 있어 본문내용과 동일한 절차사항의 중복표현을 피하기 위해 축약 사용함을 말함.

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한다』는 주로 법(또는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한 법률용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등의 표기로도 사용함.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이라고 할 경우 “시행령”을 의미.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는 법 또는 시행령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임.

일반적으로 “총리령”, “농림부령(부령)”이라고 할 경우 시행규칙을 의미.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은 주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인용되는 용어로서 별도의 훈령 또는 행정명령(지침, 요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보게재 또는 고시의 방식을 취함.